

중 국 농 업 브 리 프

2023년 5월



MONTHLY AGRICULTURAL BRIEF IN CHINA

농정 이슈

중국의 「농촌집체경제조직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 01

가격 동향

도매시장가격 / 21

소비자물가 / 23

무역 동향

농식품 수출입 / 24

식량 수출입 / 34

한중 농식품 수출입 / 38



농정 이슈



중국의 「농촌집체경제조직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1. 개요

-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2년 5월 6일 공개한 '2022년도 입법업무계획'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을 심의 대상 법률 목록에 포함
 - 지속 심의: 「흑토지보호법(黑土地保护法)」, 「축목법(畜牧法)」 개정안, 「농산물품질안전법(农产品质量安全法)」 개정안, 「야생동물보호법(野生动物保护法)」 개정안 등 15건
 - 최초 심의: 「농촌집체경제조직법(农村集体经济组织法)」, 「식량안보보장법(粮食安全保障法)」 등 24건
-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은 2022년 12월 27~30일 개최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이후 초안이 외부에 공개
 - 초안 공개와 함께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www.npc.gov.cn)와 국가법률법규DB(flk.npc.gov.cn)을 통해 2023년 1월 30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
- 「농촌집체경제조직법」 초안은 총 8장, 68조로 구성¹⁾
 - (제1장 총칙)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법률 지위, 조직 원칙, 기능 책무, 특별법인, 법률 준수, 권익 보호, 지원 조치, 주관부처 등을 통해 법률의 목적과 위상, 그리고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2장 구성원)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핵심 주체인 구성원에 대한 정의, 권리, 의무 및 자격 인정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3장 등기, 합병 및 분할)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법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 요구와 조건, 명칭과 주소, 합병과 분할, 변경, 해산,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4장 조직기구) 농촌집체경제조직 운영의 핵심인 구성원 전체회의의 구성과 직권, 의사 규칙, 구성원 대표회의, 이사회·감사회의 구성과 기능,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5장 자산 관리와 수익 분배)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범위, 자산 관리방법, 수익 분

1) 부록으로 수록한 법률 초안 전문 번역 참조

배의 원칙과 방법, 재무 및 회계감사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6장 지원 조치)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한 각급 정부의 재정, 조세, 금융, 토지, 인력 등 분야의 지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7장 분쟁 해결과 법률 책임)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내외부 관계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법률 책임, 소송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8장 부칙)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불완전할 경우 직능 대행 방법, 기존 등기의 효력 확인 문제, 법률 집행 후 구성원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표 1〉 「농촌집체경제조직법(초안)」의 구성

장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 제10조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법률 지위, 조직 원칙, 기능과 책무, 특별법인, 법률 준수, 권익 보호, 지원 조치, 주관부처 등
제2장 구성원	제11조 ~ 제19조	구성원 정의, 구성원 자격 인정, 구성원 권리와 의무, 구성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장 등기, 합병 및 분할	제20조 ~ 제26조	기본 요구와 조건, 명칭과 주소, 합병과 분할, 변경, 해산, 말소 등
제4장 조직기구	제27조 ~ 제36조	구성원 전체회의의 구성과 직권, 의사규칙, 구성원 대표회의, 이사회와 감사회의 기능과 역할 등
제5장 자산 관리와 수익 분배	제37조 ~ 제48조	자산의 범위, 자산 관리방법, 수익 분배의 원칙과 방법, 재무 및 회계감사제도 등
제6장 지원 조치	제49조 ~ 제55조	각급 정부의 재정지원, 세금혜택, 금융지원, 토지지원, 인재지원 등 조치
제7장 분쟁 해결과 법률 책임	제56조 ~ 제64조	분쟁 해결 방법, 법률 책임, 소송 방법과 절차 등
제8장 부칙	제65조 ~ 제68조	직능 대행 방법, 기존 등기의 효력, 법률 집행 후 구성원 인정, 실행 일자 등에 관한 사항

자료: 「农村集体经济组织法(草案)」(2022.12)

2. 법률의 주요 내용

□ 총칙

- (입법 취지)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이하 법률안) 제정은 농촌지역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가 기본적인 목적이며 이를 통해 중점 추진중인 농촌진흥, 농업농촌현대화 및 공동부유 촉진 기대
 - 농촌집체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농촌집체경제의 고 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의 전면적 추진,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 및 공동부유 촉진을 위해 법률 제정(제1조)
- (법률 적용 범위) 법률안의 주요 대상은 집단적 토지소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역내 향(乡)·진(镇), 촌(村) 그리고 촌(村)내부의 다양한 경제조직으로 국한되며 협동경제조직은 제외(제2조)

- 본 법률의 적용 대상인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집단적 토지소유제를 기반으로 구성원을 대표해 소유권을 행사하며 농가도급경영제도를 실시하는 농촌지역내 경제조직으로 정의
-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구체적으로 향(乡)·진(镇)지역 단위의 집체경제조직, 촌(村)지역 단위의 집체경제조직, 촌(村)지역 내부의 촌민소조(村民小组)단위 집체경제조직이 포함되며, 협동조직에 해당하는 농촌공소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농민전업합작사 등은 미포함
- (준수 원칙)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준수해야할 원칙을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반영해 4가지로 규정(제4조)
 - (1)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 중국공산당 기층조직의 구체적 영도를 자발적으로 수용, (2) 사회주의 집단소유제를 견지해 집체 및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3) 민주적 관리원칙을 견지해 집체의 구성원은 법률법규와 정관(章程)에 근거해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 부담, (4)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을 견지해 농촌지역 공동부유 촉진
- (조직의 책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률적 책무를 13가지로 규정(제5조)
 - (1) 농촌지역내 토지의 도급, (2) 농촌지역내 택지의 신청 및 사용 관련 업무, (3) 경지 등 토지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 보호 및 감독, (4) 집체가 소유한 경영성 건설용지²⁾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양도나 임대
 - (5) 집체가 소유한 자산의 경영 및 관리, (6) 집체가 출자한 기업의 소유권 변동 결정, (7) 집체 수익의 분배 및 사용, (8) 집체가 소유한 토지의 수용·점용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의 분배 및 사용
 - (9) 구성원의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 정보 등 서비스 제공, (10) 구성원을 위한 교육, 문화, 위생, 체육, 양로 등 서비스 제공 또는 촌민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 등 지원
 - (11) 촌민위원회가 촌내 당조직의 주도로 실시하는 촌민자치 지원 및 협조, (12) 농촌지역내 기타 경제조직과 사회조직의 법률에 의거한 역할 지원, (13) 법률법규와 정관이 정하는 기타 책무
- (조직의 법률적 성격)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민들의 집단적 토지소유권에 기초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집단적 토지소유권의 양도와 법인의 파산이 불가한 특별법인의 성격(제6조)
 - 집체 소유의 자산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하며 개별 구성원별로 분할 불가
 - 농촌집체경영조직은 본 법률에 의거해 등기를 마치면 특별법인의 자격을 얻게 되며 출자를 통해 기업, 농민전업합작사 등을 설립하거나 참여도 가능
- (권익 보호) 국가의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권익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특히 남녀평등 차원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내에서 부녀자에 대한 권익보호 의무를 강조(제8조)
 - 국가는 농촌집체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의 권익 침해도

2) 농촌지역에서 집체소유의 건설용 토지는 크게 택지, 공익성 공공시설용지,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등 3가지로 구분

불허.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자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침범·유용·횡령·사적분할·강탈·파괴 불가

- 부녀자도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부녀자의 미혼·결혼·배우자상실 및 가정내 남성 부재 등을 이유로 농촌집체경제조직내에서 부녀자의 권익 침해 불가

● (지원 조치)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한 국가와 각급 지방정부의 지원 조치와 관련된 사항 규정(제9조)

- 국가는 재정, 조세, 금융, 토지, 인력 및 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조치를 통해 농촌집체경제조직과 농촌집체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농촌집체경제조직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
- 국가 규정에 의거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표창·포상 수여

● (법률 주관부처) 국무원 농업농촌부가 농촌집체경제조직 설립과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기타 유관부처는 각자의 책무 범위내에서 관련 업무 책임(제10조)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가 해당 행정구역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등기 관리, 운영 감독·지도 및 도급토지와 택지 등의 집체자산 관리와 재산권 이전·거래 등의 감독·지도 책임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기타 유관부처는 각자의 직무 범위내에서 관련 업무 책임. 향급 지방정부는 해당 행정구역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관리감독 등 책임

□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자격,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주요 규정

● (자격)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탈퇴 등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의) 현재 혹은 과거에 농촌집체경제조직에 호적이 등재되었고 농촌집체경제조직과 안정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기본적인 생활보장 수단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제11조)

- (자격 인정)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은 '역사 존중, 현실 고려, 절차 규범, 군중 인가'의 원칙에 의거해 호적관계, 농촌토지 도급관계, 생산 및 생활 현황, 기본적인 생활보장 수단, 집체에 대한 공적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부여.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결혼, 생육, 부양, 입양, 정책성 이주로 인해 증가한 인원도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제12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본 법률과 소재지 행정구역내 상황에 의거해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 가능(제12조)

- 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생산·생활 관련 또는 기타 이유로 집체경제조직에 가입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자격 인정 가능. 단, 타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은 동시에 자동 상실한 것으로 간주(제15조)

- (자격 상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 상실 요건을 ①사망 또는 법률에 의해 사망 선고된 경우

②중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신분을 취득한 경우 ④국가공무원이 된 경우 ⑤자원 탈퇴한 경우 ⑥법률법규와 정관이 규정한 기타 경우 등 6가지로 명시(제18조)

- 단, ③④⑤의 경우 구성원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 또는 집체경제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집체자산에 대한 권익 유지 가능(제18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노동, 상업, 군복무, 징역, 취학 등으로 잠시 집체경제조직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을 이유로 부녀자 구성원의 자격 박탈 불가(제19조)

● (권리와 의무)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각각 10가지와 7가지로 명시

- (10대 권리) ①구성원 대표, 이사회 혹은 감사회 구성원(감사)의 선출 및 피선출 ②구성원 전체회의와 구성원 대표회의의 참석 및 집체경제조직의 중요 사안·사무에 대한 표결·결정 ③재무회계보고, 회의기록 등의 자료 열람 및 복사와 관련 사항 파악 ④집체소유 자산의 경영·관리 활동 및 집체 수익의 분배·사용 감독, 의견 제시 및 건의 ⑤집체경제조직이 도급주는 농촌토지의 도급 ⑥택지 사용권의 신청 및 취득 ⑦집체경제 수익의 분배 참여 ⑧집체소유 토지의 수용·점용시 토지보상비 배분 참여 ⑨집체경제조직의 서비스와 복지 혜택 수혜 ⑩법률법규 및 정관이 규정한 기타 권리(제13조)

- (비구성원의 권리 행사)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이 없지만 장기간 해당 집체경제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고 있고 조직에 대한 기여가 큰 경우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누리는 권리의 행사 및 복지 혜택 수혜 허용. 단, 구성원의 10대 권리(제13조)중 일부 권리(⑤⑥⑧)는 행사 불가(제16조)

- (7대 의무) ①법률법규 및 집체경제조직 정관 준수 ②집체경제조직의 결정·결의 집행 ③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④집체소유 토지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 ⑤집체경제조직의 생산·경영·관리 활동 참여 및 지원 ⑥집체경제조직이 주최하는 공익활동 참여 및 지원 ⑦법률법규 및 정관이 규정한 기타 의무(제14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등기,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주요 규정

-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기본적으로 촌(村)단위로 설립하되 촌내부의 촌민소조(村民小组: 인민공사시기 생산대가 인민공사 해체후 촌민소조로 변신)나 향(乡) 또는 진(镇) 지역은 필요시 설립 가능하며 반드시 집체토지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

- (등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등기를 위해서는 구성원, 집체소유 자산, 정관, 명칭 및 주소, 조직기구를 구비해하며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정관 표결, 구성원 확인, 이사회·감사회 선거를 거친 후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에 등기 신청 및 등기증 수령(제21조~제23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을 각각 명확하게 규정

- (법인 합병)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병시에는 반드시 재무제표(资产负债表)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구성원 전체회의의 결의를 거쳐 향(乡)급 지방정부의 심의와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승인 필요. 합병 승인 후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는 집체경제조직에게 채무 상환이나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합병되는 두 조직 각각의 채권과 채무는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집체경제조직이 승계하거나 쌍방의 협의하에 처리(제24조)

- (법인 분할)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분할시에는 반드시 재산 분배 및 채권채무 분리를 실시하고 구성원 전체회의의 결의를 거쳐 향(乡)급 지방정부의 심의와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승인 필요. 분할 승인후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분할시 채권자와 채무 청산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분할 이전의 채무는 분할후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승계(제25조)
- (등기 변경, 해산 및 말소)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합병 또는 분할시 반드시 법인등기를 변경하고,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인해 법인이 해산된 경우 등기 말소(제26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조직기구에 관한 주요 규정

- (구성원 전체회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최고 심의 및 의결 기구는 구성원 전체회의이며 집체경제조직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결정. 단,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경우 정관에 의거해 구성원 대표회의로 대체 가능하지만 구성원 전체회의의 직권중 일부 직권의 행사 배제
 - (구성원 전체회의의 직권) ①정관 제·개정 ②조직 내부 관리제도 제·개정 ③구성원의 자격 인정 및 가입 결정 등 ④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 선출·파면 ⑤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보고 심의 ⑥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 보수 및 주요 경영관리자의 임용·해임·보수 결정 ⑦집체경제발전계획, 업무경영계획, 예결산표 및 수익분배 방안의 승인 ⑧농촌토지 도급, 택지 사용, 집단소유의 경영성 건설용토지의 양도·임대, 집단소유 경영성 자산수익권의 지분 계량화 등 사안에 대한 결의 ⑨토지보상비 등의 사용 및 분배 방법 결정 ⑩대의 투자 등 중요 사안 결정 ⑪집체경제조직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결정 ⑫법률 법규 및 정관이 규정한 기타 직권(제27조)
 - (구성원 전체회의의 의사 규칙)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성원이 주재. 집체경제조직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되며 안건 표결은 1인1표 방식으로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시 안건 통과. 단, 법률과 정관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 적용(제28조)
 - (구성원 대표회의) 일반적으로 5~15가구 당 대표 1명을 선출하되 총 인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적절한 인원의 여성 대표 포함 필수. 대표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같이 5년이며 연임 가능하고, 안건 표결은 구성원 대표의 2/3 이상 찬성시 안건 통과(제29조)
- (이사회 및 감사회) 농촌집체경제조직내에 이사회와 감사회(감사)를 두어 조직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 (이사회) 일반적으로 3~7명 사이에서 홀수로 구성하고 1명의 이사장을 두되 부이사장직 설치도 가능. 이사장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정 대표이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회 구성원간 친척관계는 반드시 피하도록 규정(제30조)
 - (감사회) 구성원 전체회의와 구성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이사회 집행 상황 감독, 집체자산의 경영관리 상황 조사·감독, 집체경제조직의 재무 상황 심의·감독 등 실시. 구성원 수가 적어 감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회(감사)의 설치 방법, 업무, 의사 방식 및 표결 절차 등은 정관에서 규정(제33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자산 관리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주요 규정

- (자산의 범위와 관리 원칙)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한 집체자산의 세부 내역과 각 자산별 관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산 구분(제37조)	관리 원칙(제38조 ~ 제41조)
①토지,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갯벌) 등	• 농민집체가 사용하는 집체소유나 국가소유의 경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도급경영 실시(제38조) - 도급경영을 실시하지 않는 기타 농촌토지: 집체경제조직이 직접 경영 또는 도급 경영하거나 토지경영권의 임대·지분출자 등 방식으로 경영 가능(제39조) • 집체소유의 택지 등 건설용지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해 취득·사용·관리(제38조) - 집체소유의 경영성 건설용지: 집체경제조직이 집체경제와 농촌산업 발전에 우선적 이용. 단, 양도·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위 또는 개인의 유상사용 가능(제40조)
②건축물, 생산시설, 수리시설 등	• 국가 유관 규정과 정관에 의거해 경영·관리(제38조)
③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위생·체육·교통 등 관련 시설과 농촌주민 거주환경 기초시설	• 법률법규, 국가 유관 규정 및 정관에 의거해 경영·관리(제38조)
④현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자금	• ②④⑤⑥⑦은 집체소유의 경영성 자산으로 구분하며 이들 경영성 자산의 수익권은 지분배당 형식으로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별로 할당 가능. 구체적인 지분 계산방법은 국무원(중앙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가 제정(제41조)
⑤집체경제조직이 투자해 설립한 기업 및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타 경제조직의 자산몫	
⑥무형자산	
⑦집체경제조직이 받은 국가지원금, 사회기부금, 감면 세비 등으로 형성된 자산을 포함한 기타 자산	

- (자산 관리 관련 제도)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자산 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용 방법을 명시
 - (관리제도)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소유 자산의 조사, 보관, 사용, 처분, 공개 등 자산관리제도를 수립해 자산 유지와 증식을 촉진하도록 규정.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체적인 자산 관리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성급 지방정부가 제정하도록 규정(제43조)
 - (재무 회계·공개·보고제도) 국무원 유관 부처가 제정한 농촌집체경제조직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재무관리와 회계를 실시하고 관련 기구 및 인력 배치도 규정(제44조). 또한 정기적으로 재무상황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제45조) 한편 매년 경영보고, 재무회계보고 및 수익분배방안보고를 실시하도록 규정(제46조)
 - (회계 감사 및 감독)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와 향(鄉)급 지방정부가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해 정기 회계 감사 및 특별 회계 감사 실시. 회계 감사방법은 국무원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가 제정(제47조)
- (수익 분배 원칙 및 절차)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수익 분배 원칙과 절차 명시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당해년도 수익은 정관 규정에 의거해 먼저 손실 보충, 생산·경영 확대,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복지 제공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분배가능한 수익은 구성원별로 계산된 집체소유 경영성 자산권의 지분 배당몫에 따라 분배(제42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조치 관련 주요 규정

- (재정)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가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제49조)
 - 각급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농업발전·농촌개발사업은 적절한 사업을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집체경제조직에 우선적으로 배정. 국가는 낙후지역, 혁명기념지역, 소수민족지역 및 변경지역에 위치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우선적으로 지원
- (조세)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 제공도 명시
 -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재산권제도를 개혁하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리 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전개할 때 국가규정에 의거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제50조)
 - (공공지출 원가 산입)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 공익과 종합서비스, 촌(村)급 조직과 촌업무 운용 등에 사용하는 지출은 국가 규정에 의거해 상응하는 원가비용으로 처리(제51조)
- (금융) 정책금융기관이 업무범위내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다양한 경로와 형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한다고 명시(제52조)
 - 국가는 상업적 금융기관이 농촌집체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집체경제발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한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한 농촌 집체경영성 재산권 저당대출을 장려하고, 융자담보기관과 보험기관이 농촌집체경제조직에게 각각 융자담보서비스와 보험서비스 제공 장려
- (토지) 향(乡)급 지방정부는 마을개발계획 편제시 반드시 실제 수요에 근거해 집체경제발전을 위한 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안배할 것을 명시(제53조)
 - 토지정리로 새롭게 증가한 토지의 거래수익은 반드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
- (기타 지원 조치) 농촌집체경제조직 운영인력의 육성·유치 및 농촌지역 인프라건설을 위한 지원 명시
 - 현(縣)급 및 향(乡)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경영관리 인력풀 구축을 강화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 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인센티브기제를 개선해 다양한 부문의 인재들이 농업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치 및 장려(제54조)
 - 각급 지방정부가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교통 등 공공서비스시설과 농촌주민 거주환경 기초시설 건설 측면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발전을 위해 지원(제55조)

□ 분쟁 해결 및 법률 책임 등에 관한 주요 규정

- 농촌집체경제조직내 구성원 자격 확인, 내부 관리, 수익 분배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분쟁 해결 절차와 주요 책임자의 법률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분쟁 해결 절차)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 확인에 이의가 있거나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내부 관리,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를 신청하거나 향(乡)급 지방정부 또는 현(县)급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에 조정 신청 가능. 만약 중재·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중재·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고소 가능(제56조)
 - (주요 책임자의 법률 책임)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과 주요 경영관리인이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제36조 제2항)를 한 경우 향(乡)급 지방정부 또는 현(县)급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가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법률적 책임 추궁. 집체소유 자산의 손실을 야기했다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형사책임 추궁(제58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과 주요 경영관리인의 법률법규 또는 정관 규정 위반시 대위소송 및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책임자의 결정에 따른 구성원의 권익 침해시 철회청구 제도 실시 명시
 - (대위소송)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과 주요 경영관리인이 법률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해 집체경제조직에 손실을 입힐 경우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가 인민법원에 고소 진행. 단, 적시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10명 이상의 집체경제조직 구성원들이 감사회(감사)가 고소를 진행하도록 서면 청구 가능(제61조)
 - 감사회(감사)가 서면 청구서 수령 후 고소를 거절하거나 15일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를 작성했던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직접 고소 가능(제61조)
 - (철회청구)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책임자의 결정으로 인해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철회 청구 가능. 단, 철회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철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 소멸(제62조)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경영·자산관리 활동 보호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책임 사항과 부당 행정행위에 대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제 조치 사항도 명시
 - (지방정부의 법률책임)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유관 부처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경영·자산관리 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여할 경우 상위의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책임자의 법률적 책임도 추궁(제63조)
 - (부당 행정행위 구제 조치)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고소 가능(제64조)

□ 기타 주요 규정

-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조직하기에 여건이 불비한 경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소조가 법률에 근거해 집체경제조직의 직능 대행 가능(제65조)

- 촌민위원회, 촌민소조(村民小组)가 집체경제조직의 직능을 대행할 경우, 집체소유의 자산과 구성원의 권익과 관련한 사항은 본 법률의 상관 규정을 참고해 결정
- 기존 등기의 효력 확인 및 집체재산권제도 개혁과 연계
 - (기존 등기의 효력 확인) 본 법률 실시 이전에 이미 국가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집체경제조직은 법률 실시 후에도 계속 유효(제66조)
 - (집체재산권제도 개혁과 연계) 본 법률 실시 이전에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 하면서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한 경우 법률 실시 후에도 계속 유효(제67조)

3. 시사점

-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은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집체경제의 성격과 관리 방안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토지 등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자산 운영과 관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성립 이후 토지 공유를 기반으로 한 집체경제체제를 유지. 하지만 1950년대 초부터 시작한 합작사운동, 인민공사운동, 대약진운동 등 극단적인 공유제와 형식주의로 농촌경제의 파탄을 초래
 - 1970년대 말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극단적인 공유제를 완화해 토지를 농가에게 도급(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유경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해 농촌경제에 긍정적 변화 초래. 하지만 농촌 토지 등 농민들 집단 소유의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많은 농촌지역에서 갈등과 분쟁을 초래
 - 따라서 조만간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이 제정된다면 농촌집체 소유의 토지 등 자산에 대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짐으로써 농촌지역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구축되어 갈등과 분쟁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시진핑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결국 농촌지역의 최말단 경제조직인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개혁과 혁신.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의 제정은 2021년 제정된 「향촌진흥촉진법」과 아울러 시진핑 정부 농촌진흥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정부는 2018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진흥전략을 제시하고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 3년 동안 농촌진흥을 삼농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으로서 강조. 이를 위해 2018년 ‘향촌진흥전략규획(2018~2022)’을 수립하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21년에 농촌지역의 산업, 환경, 문화, 자치, 민생 등 방면에서 광범위한 목표 달성을 제시한 「향촌진흥촉진법」 제정
 - 이번에 초안이 공개된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은 농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토지 등 자산에 대한 접근과 관리 및 운영에서 집체경제조직의 운영자와 지방정부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법률에서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주요 자산인 토지의 불법적인 유용, 남용, 점용, 매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최종적으로 제정될 법률의 내용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함으로써 향후 한국 기업 등이 중국 농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마찰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 참고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중국농업브리프」 2021년 7월호

百度百科(2022.5.21.). “中华人民共和国农村集体经济组织法”(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4%BA%BA%E6%B0%91%E5%85%B1%E5%92%8C%E5%9B%BD%E5%86%9C%E6%9D%91%E9%9B%86%E4%BD%93%E7%BB%8F%E6%B5%8E%E7%BB%84%E7%BB%87%E6%B3%95/60994793?fr=aladdin)

法治网(2023.3.16.). “孙宪忠代表建议完善农村集体经济组织法草案”(http://www.legaldaily.com.cn/rdlf/content/2023-03/16/content_8833534.html)

微信公众号(2022.12.31.). “全文 | 农村集体经济组织法(草案)”(https://mp.weixin.qq.com/s?_biz=MzIyODI5MzI4MA==&mid=2247498801&idx=2&sn=3afca191c888e0e247518958251bec9b&chksm=e85693fedf211ae862ea49b3d95bae0674093e4df3c3d949f2eb8fe07dca03edb04845e42e04&scene=27)

中国人大网(2022.2.15.). “制定农村集体经济组织法 研究起草草案初稿”(http://www.npc.gov.cn/npc/c30834/202202/a9e12e772b29423d8808592ab50160e9.shtml)

박경철(충남연구원, 북경대학 방문학자)
kcpark@cni.re.kr

부록. 「농촌집체경제조직법(초안)」 전문 번역

제1장 총칙

제1조(입법 취지)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그 행위를 규범화하며, 농촌집체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기본경영체도와 사회주의기본경제체도를 확고히 하고, 농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농업농촌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법률에서 지칭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은 토지집체소유를 기초로 구성원을 대표해 집단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며, 농가도급경영을 기초로 통일 경영과 분산 경영이 결합된 쌍층경영체제의 지역적 경제조직이다. 여기에는 향(乡)·진(镇)급 집체경제조직, 촌(村)급 집체경제조직, 촌내부의 촌민소조(村民小组)급 집체경제조직이 포함되며, 농촌공소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농민전업합작사 등 합작경제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법률 지위)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촌집체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공유제를 공고히 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 주체로서 농촌거버넌스체계를 완성하고 농촌선치(善治)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당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에서 당의 집정 토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제4조(조직 원칙)

농촌조직경제조직은 반드시 이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 (1)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 중국공산당 기초조직의 구체적 영도를 자발적으로 수용한다.
- (2) 사회주의 집체소유제를 견지해 집체와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3) 민주적 관리를 견지해 집체의 구성원은 법률법규와 정관에 의거해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4)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을 견지해 농촌지역의 공동부유를 촉진한다.

제5조(기능 책무)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법률에 의거해 구성원 집단을 대표해 소유권을 행사하며, 반드시 집체자산(财产; 이하 财产을 자산으로 번역함) 관리, 집체자원 개발, 집체경제 발전, 집체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등 방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법률에 의거해 이하의 책무를 이행한다.

- (1) 농촌지역내 토지의 도급
- (2) 농촌지역내 택지의 신청 및 사용 관련 업무
- (3) 경지 등 토지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 보호 및 감독
- (4) 집체가 소유한 건설용지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양도나 임대
- (5) 집체가 소유한 자산의 경영 및 관리
- (6) 집체가 출자한 기업의 소유권 변동 결정
- (7) 집체 수익의 분배 및 사용
- (8) 집체가 소유한 토지의 수용·점용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의 분배 및 사용
- (9) 구성원의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 정보 등 서비스 제공
- (10) 구성원을 위한 교육, 문화, 위생, 체육, 양로 등 서비스 제공 또는 촌민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 등 지원
- (11) 촌민위원회가 촌내 당조직의 주도로 실시하는 촌민자치 지원 및 협조
- (12) 농촌지역내 기타 경제조직과 사회조직의 법률에 의거한 역할 지원
- (13) 법률법규와 정관이 정하는 기타 책무 실시

제6조(특별 법인)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민집체토지소유권을 기초로 설립되고 집체토지소유권은 법률에 의거해 양도가 불가하며 농촌집체경제조직은 파산할 수 없다.

집체자산은 법률에 의거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경영관리하며 구성원 개인에게 분할할 수 없다.

농촌집체경영조직은 본 법률에 의거해 등기하고 특별법인의 자격을 획득하며 법률에 의거해 그 이행 책무에 상응하는 민사활동에 종사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법률에 의거해 기업, 농민전업합작사 등 시장주체를 출자해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설립된 시장주체

는 법률에 의거해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시장주체에 상응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그 자산으로 채무를 책임진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한 시장주체의 채무를 출자액 한도내에서 책임진다.

제7조(법률 준수)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법률에 의거해 경제관리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사회공중도덕과 상도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권익 보호)

국가는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된다.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이 집체소유한 자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침범·유용·횡령·사적분할·강탈·파괴해서는 안된다.

부녀자도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부녀자의 미혼·결혼·배우자상실 및 가정내 남성 부재 등을 이유로 농촌집체경제조직내에서 부녀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9조(지원 조치)

국가는 재정, 조세, 금융, 토지, 인력 및 산업정책 등 지원 조치를 통해 농촌집체경제조직과 농촌집체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농촌집체경제조직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국가 규정에 의거해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제10조(주관 부처)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처가 전국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설립과 발전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다. 국무원 기타 유관부처는 각자의 책무 범위내에서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주관부처는 해당 행정구역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등기관리, 운영감독 지도 및 도급토지, 택지 등 집체자산 관리와 재산권 이전 및 거래 등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기타 유관부처는 각자의 책무 범위내에서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향(鄉)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는 해당 행정구역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관리감독 등을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농촌집체경제조직 업무의 종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설립과 발전을 통합적으로 지도·조정·지원·촉진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조치를 취해 기층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집체재산 관리감독서비스체계를 완성하는 한편 집체재산 관리감독 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제2장 구성원

제11조(구성원 정의)

현재 혹은 과거에 농촌집체경제조직에 호적이 등재되었고 농촌집체경제조직과 안정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기 기본적인 생활보장 수단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12조(구성원 인정)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역사존중·현실고려·절차규범·군중인가의 원칙에 의거해 호적관계, 농촌토지 도급관계, 생산 및 생활 현황, 기본적으로 생활보장 수단, 집체에 대한 공적 상황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에 따라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구성원 명부를 제작 또는 변경한다.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결혼·생육·부양·입양·정책성이주로 인해 증가한 인원은 일반적으로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상황과 연계해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자격 조건과 구성원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구성원의 권리)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1) 법률과 정관에 근거해 구성원 대표, 이사회 혹은 감사회 구성원(감사)의 선출 및 피선출
- (2) 정관에 근거해 구성원 전체회의와 구성원 대표회의의 참석 및 집체경제조직의 중요 사안·사무에 대한 표결·결정
- (3) 재무회계보고, 회의기록 등의 자료 열람 및 복사와 관련 사항 파악
- (4) 집체소유 자산의 경영·관리 활동 및 집체 수익의 분배·사용 감독, 의견 제시 및 건의
- (5) 법률에 의거해 집체경제조직이 도급주는 농촌토지의 도급
- (6) 법률에 의거해 택지 사용권의 신청 및 취득

- (7) 집체경제 수익의 분배 참여
- (8) 집체소유 토지의 수용·점용시 토지보상비 배분 참여
- (9) 집체경제조직의 서비스와 복지 혜택 수혜
- (10) 법률법규 및 정관이 규정한 기타 권리

제14조(구성원의 의무)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 (1) 법률법규 및 집체경제조직 정관 준수
- (2) 집체경제조직이 법률과 정관의 의거해 도출한 결정·결의 집행
- (3)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 (4) 집체토지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
- (5) 집체경제조직의 생산·경영·관리 활동 참여 및 지원
- (6) 집체경제조직이 주최하는 공익활동 참여 및 지원
- (7) 법률법규 및 정관이 규정한 기타 의무

제15조(타 집체경제조직에서 가입한 구성원)

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생산·생활 관련 또는 기타 이유로 해당 집체경제조직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인정되며 이 구성원의 타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은 이와 동시에 자동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비구성원의 구성원 권익과 복지 부분적 향유)

농촌집체경제조직 비구성원이 장기간 해당 집체경제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고 있고 조직에 대한 기여가 큰 경우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누리는 권익과 복지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단, 본 법률 제13조의 5, 6, 7항에서 규정한 권익은 향유할 수 없다.

제17조(구성원의 자원 탈퇴)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서면 신청과 집체경제조직의 동의를 거쳐 집체경제조직을 자원 탈퇴할 수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자원 탈퇴한 경우 농촌집체경제조직과 협의해 합당한 보상을 받거나 이미 향유한 자산 권익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으나 집체자산의 분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18조(구성원의 신분 상실)

아래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신분을 상실한다.

- (1) 사망 또는 법률에 의해 사망 선고된 경우
-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신분을 취득한 경우
- (4) 국가공무원이 된 경우
- (5) 자원 탈퇴한 경우
- (6) 법률법규와 정관이 규정한 기타 경우

앞의 (3), (4), (5) 상황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집체경제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향유한 자산 권익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구성원 신분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노동, 상업, 군복무, 징역, 취학 등으로 인해 잠시 집체경제조직을 떠나는 경우 이로 인해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부녀자 구성원은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을 이유로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장 등기, 합병 및 분할

제20조(기본 요구)

촌(村)은 반드시 집체경제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촌민소조(村民小组)는 상황에 따라 집체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향(乡)·진(镇)은 필요성이 확실이 있으면 집체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집체토지소유권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21조(기본 조건)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본 법률 제21조 규정에 부합하는 구성원
- (2) 본 법률 제37조 규정에 부합하는 집체 자산
- (3)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정관
- (4) 본 법률 제22조 규정에 부합하는 명칭과 주소
- (5) 본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처는 본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해 농촌집체경제조직 시범정관을 제정한다.

제22조(명칭과 주소)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명칭에는 “농촌집체경제조직” 자구와 소속 현(縣)·시(市)·구(區), 향(鄉)·민족향(民族鄉)·진(鎮), 촌(村) 또는 촌민소조(村民小組)의 명칭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주소는 주요 업무기구의 소재지로 하도록 한다.

제23조(등기)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정관을 표결해 통과시키고 구성원을 확인하는 한편 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한 후 반드시 제때에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주관부처에 등기를 신청하고 농촌집체조직 등기 증서를 취득하도록 한다. 등기 방법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처가 제정한다.

제24조(합병)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병시에는 반드시 재무제표(資產負債表)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병은 반드시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향(鄉)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의 심의를 거친 후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합병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는 집체경제조직에게 법률에 의거해 채무상환이나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합병되는 두 조직 각각의 채권과 채무는 합병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승계하거나 쌍방이 협의해 처리한다.

제25조(분할)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분할시에는 반드시 자산을 분배하고 채권·채무를 분리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분할시에는 반드시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향(鄉)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의 심의를 거친 후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분할을 승인받은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분할되기 이전의 채무는 분할된 이후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연대책임을 지지만, 분할되기 이전에 채권자와 이미 채무 청산에 관해 서면으로 협의한 경우 이를 준수한다.

제26조(변경, 해산 및 말소)

농촌집체경제조직은 합병하거나 분할할 경우 반드시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제4장 조직 기구

제27조(구성원 전체회의의 구성과 직권)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전체회의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지닌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권력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정관 제·개정
- (2) 농촌집체경제조직 내부 관리제도의 제·개정
- (3)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 인정, 구성원 가입 결정 등
- (4) 이사회와 감사회(감사)의 구성원 선출·파면
- (5) 이사회와 감사회(감사)의 업무보고 심의
- (6) 이사회와 감사회(감사) 구성원의 보수 및 주요 경영관리자의 임용·해임·보수결정
- (7)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집체경제발전계획, 업무경영계획, 예결산표 및 수익분배방안의 승인
- (8) 법률에 의거해 농촌토지 도급, 택지 사용,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사용권 양도·임대 등, 집체경영성 자산수익권의 지분 계량화 등 사안에 대한 결의
- (9) 토지보상비 등의 사용 및 분배 방법 결정
- (10) 대외 투자 등 중요 사안 결정

(11)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결정

(12) 법률법규 및 정관이 규정한 기타 직권

구성원 전체회의에서 심의·결정하는 중요 사안은 반드시 먼저 촌(村)당조직 또는 향(乡)·진(镇)당위원회의 연구·토론을 거쳐야 한다.

제28조(구성원 전체회의 의사규칙)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구성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2/3 이상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구성원 전체회의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하며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구성원이 주재한다.

구성원 전체회의는 1인1표의 표결방식을 실행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전체회의는 2/3 이상 구성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법률과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정관에 별도의 보다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한다.

제29조(구성원 대표회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비교적 많은 경우 정관 규정에 의거해 구성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구성원 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15가구 당 대표 1명을 선출하고 대표의 수는 반드시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여성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구성원 대표의 임기는 이사회와 동일하게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구성원 대표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해 본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구성원 전체회의의 직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1), (3), (8), (9), (11)이 규정한 직권은 제외한다.

구성원 대표회의에서 결정은 구성원 대표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제30조(이사회 구성)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3~7명의 홀수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1명의 이사장을 두며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규정한다. 이사회 구성원간 친족관계는 반드시 피하도록 한다.

이사장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정 대표이다.

촌(村)당조직은 농촌집체경제조직 이사회의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촌(村)당조직의 책임자는 법정 절차를 거쳐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직권)

이사회는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를 책임지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의 소집·주재 및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시 업무보고

(2)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의 결정 집행

(3) 정관의 개정 초안 작성

(4) 집체경제발전계획, 업무경영계획, 내부관리제도 등의 초안 작성

(5) 농촌토지 도급, 택지 사용,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양도·임대 등, 집체경영성 자산수익권 지분 계량화 등 방안의 초안 작성

(6) 대외 투자방안 초안 작성

(7) 연도예결산표, 수익분배방안 등의 초안 작성

(8) 주요 경영관리인의 임용·해임 및 보수 건의

(9) 법률법규와 정관에 의거해 집체 자산과 재무 관리 및 집체자산의 안전 보장(도급·임대·출자 등 계약 체결, 도급인·임차인·피투자자 등의 계약 이행 감독)

(10) 관련 질의의 접수, 처리 및 답변

(11) 정관이 규정한 기타 직권

제32조(이사회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2/3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1인1표 표결방식을 실행한다. 이사회 회의는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통과한다.

이사회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정관으로 규정하되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한다.

제33조(감사회)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감사회를 두며 구성원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1~2인의 감사를 두어 이사회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의 결의(대표) 집행 감독, 집체자산 경영관리 현황 감독·조사, 해당 집체경제조직 재무상황 심의·감독 등 내부를 감독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재무 상황에 대해 내부 심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회(감사)의 구성 방법, 구체적 직권, 의사방식과 표결절차 등은 정관에서 규정하되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한다.

제34조(회의 기록)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와 이사회·감사회(감사)가 소집한 회의에서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해 회의 기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제35조(교차 임직)

농촌집체경제조직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 촌(村)당조직 임원 및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겸직할 수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 이사회 구성원, 재무회계 직원 및 그와 가까운 친척은 감사회 구성원(감사)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36조(의무와 금지 행위)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은 반드시 법률법규와 집체경제조직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신용·근면·근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집체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집체자산을 관리하고 집체경제조직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과 주요 경영관리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집체자산의 무단점유, 유용, 횡령, 편취, 강탈, 파괴
- (2) 농촌집체경제조직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대출
- (3) 집체자산으로 타인 채무에 담보 제공
- (4)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여 지방정부에 채무 부담
- (5) 농촌집체경제조직 명의의 불법자금 모금 등 불법 금융활동
- (6) 집체자산의 자가 환산, 양도, 임대
- (7) 집체자산으로 협력기업에 가입해 보통동업자 되기
- (8) 타인이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거래 시 납부한 수수료의 개인적 착복
- (9)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상업적 비밀 폭로
- (10) 기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제5장 자산 관리와 수익 분배

제37조(집체자산)

집체자산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 (1) 집체소유의 토지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갯벌) 등
- (2) 집체소유의 건축물, 생산시설, 농경지 수리시설 등
- (3) 집체소유의 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위생·체육·교통 등 관련 시설과 농촌주민 거주환경 기초시설
- (4) 현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집체소유의 자금
- (5) 집체경제조직이 투자해 설립한 기업 및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타 경제조직의 자산 몫(지분)
- (6) 집체 소유의 무형자산
- (7) 해당 집체경제조직이 받은 국가지원금, 사회기부금, 감면 세비 등으로 형성된 자산을 포함한 집체소유의 기타 자산

제38조(관리원칙)

법률에 의거해 농민집체가 사용하는 집체소유와 국가소유의 경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법률에 의거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률에 의거해 도급경영을 실시한다.

집체소유의 택지 등 건설용지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해 취득, 사용, 관리한다.

집체소유의 건축물, 생산시설, 농경지 수리시설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국가의 관련 규정과 정관에 근거해 경영 및 관리한다.

집체소유의 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위생·체육·교통 등 관련 시설과 농촌주민 거주환경 기초시설은 법률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과 정관에 근거해 경영 및 관리한다.

제39조(기타 농촌토지의 경영)

법률에 의거해 농가 도급을 실시하는 경지, 임지, 초지 이외의 기타 농촌토지는 집체경제조직이 직접 경영하거나 법률에 의거해 도급 경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법률에 의거해 토지경영권의 임대, 출자 등 방식으로 경영할 수도 있다.

제40조(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경영)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집체경영성 건설용지는 집체경제조직이 반드시 먼저 집체경제와 농촌산업의 발전에 이용해야 하지만 법률에 의거해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위 또는 개인의 유상사용도 가능하다.

제41조(경영성 자산의 계량화)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구성원의 집체수익분배 참여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집체소유의 경영성 자산 수익권을 지분배당 형식으로 해당 집

체경제조직의 구성원에게 할당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경영성 자산은 본 법률 제37조의 (1), (3)을 제외한 집체자산이다.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처는 본 법률에 의거해 집체경영성 자산 수익권의 구체적인 지분 계산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익분배 원칙과 순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당해년도 수익은 반드시 정관의 규정에 의거해 먼저 공적공익금(公积公益金)을 떼어내 손실 보충, 생산·경영 확대,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복지 제공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분배가능한 수익은 구성원별로 계산된 집체경영성 자산 수익권의 지분배당 몫에 따라 분배한다.

제43조(관리제도)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집체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체자산의 조사, 보관, 사용, 처분, 공개 등 제도를 마련하여 집체자산의 유지와 증식을 촉진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성(省)급 지방정부는 실제상황에 의거해 해당 행정구역내 구체적인 농촌집체자산 관리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집체자산 관리의 제도화, 규범화, 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제44조(재무회계제도)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국무원 유관부처가 제정한 농촌집체경제조직 재무회계제도에 근거해 재무 관리와 회계 계산을 실시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회계업무의 수요에 근거해 반드시 회계조직을 설치하거나 회계 인력을 배치하고 책임자를 지명하거나 규정에 의거해 대리기장을 위탁해야 한다.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집체소유 자금을 예치해서는 안된다.

제45조(재무공개제도)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무현황을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집체자산의 관리사용 현황과 집체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사안은 반드시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 이사회는 반드시 공개된 사안의 진실성을 보증해야 한다.

제46조(재무보고제도)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매년 경영보고, 재무회계보고 및 수익분배방안을 작성하고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가 열리기 15일 전에 집체경제조직 구성원들에게 제공해 열람토록 한다.

제47조(회계감사감독)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회계감사감독을 강화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주관부처와 향(乡)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는 상황에 근거해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해 정기 및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회계감사 방법은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처가 제정한다.

제48조(기타 감독)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반드시 집체자산의 관리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관련 기관 및 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지원 조치

제49조(재정 지원 조치)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집체 구성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급 지방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농업발전·농촌건설사업은 법률에 의거해 적절한 사업을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국가는 낙후지역과 혁명기념지역, 소수민족지역 및 변경지역에 위치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유관부처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재정보조자금의 사용 현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50조(세수 지원 조치)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법률에 의거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에 의거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재산권제도를 개혁하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리 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전개할 때 국가 규정에 의거해 세금우대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제51조(공공지출 원가 산입)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 공익과 종합서비스, 촌(村)급 조직과 촌업무 운용 보장 등에 사용하는 지출은 국가 규정에 의거해 상응하는 원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52조(금융 지원 조치)

국가는 정책금융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업무범위내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집체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재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상업적 금융기관이 농촌집체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집체경제발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해 농촌집체경영성 재산권 저당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독려하며, 융자담보기관과 보험기관이 농촌집체경제조직에게 각각 융자담보서비스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53조(토지 지원 조치)

향(乡)급 지방정부는 마을개발계획 편제시 반드시 실제 수요에 근거해 집체경제발전사업별 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토지정리로 새롭게 증가한 토지의 거래수익은 반드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54조(인재 지원 조치)

현(县)·향(乡)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는 반드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경영관리 인력풀 구축을 강화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 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인센티브기제를 개선해 다양한 부문의 인재들이 농업농촌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장려한다.

제55조(기타 지원 조치)

각급 지방정부는 반드시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교통 등 공공서비스시설과 농촌주민 거주환경 기초시설 건설 측면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제7장 분쟁 해결과 법률 책임

제56조(내부 분쟁의 해결)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신분 확인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 내부관리, 운영 및 수익분배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를 신청하거나 향(乡)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 또는 현(县)급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주관부처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중재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중재 판결과 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제57조(정관과 결의의 감독)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정관 또는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전체회의(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와 결정이 법률법규를 위반한 경우 향(乡)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 또는 현(县)급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주관부처가 책임지고 시정을 명한다.

제58조(주요 책임자의 법률 책임)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과 주요 경영관리인이 본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향(乡)급 지방정부(또는 동사무소) 또는 현(县)급 지방정부의 농업농촌 주관부처 책임을 지고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법률에 근거해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집체자산의 손실을 야기했다면 법률에 의거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법률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규정 위반 담보의 효력과 법률 책임)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경영관리인이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집체자산을 타인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 담보는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60조(권리 침해의 소송구제)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법률에 의거해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제61조(구성원의 대위소송)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과 주요 경영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법규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해 집체경제조직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반드시 배상책임을 진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 구성원과 주요 경영관리인이 위 행위를 한 경우 집체경제조직의 이사회·감사회(감사)가 인민법원에 고소를 진행한다. 단, 적시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10명 이상의 집체경제조직 구성원들이 감사회(감사)가 고소를 진행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감사회(감사)가 서면 청구서를 수령한 후 고소를 거절하거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를 작성했던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들이 집체경제조직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인민법원에 직접 고소할 수 있다.

제62조(구성원의 철회소송)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그 책임자가 한 결정이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그 결정과 선의에 근거해 상대방이 만든 민사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침해를 받은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은 철회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철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한다.

제63조(지방정부의 법률 책임)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유관부처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경영·자산관리 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여할 경우 상위의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해 관련 책임자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부당 행정행위의 구제)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률에 의거해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65조(직능 대행)

농촌집체경제조직기구가 온전하지 않는 경우 촌민위원회나 촌민소조(村民小组)가 법률에 의거해 집체경제조직의 직능을 대행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와 촌민소조(村民小组)이 법률에 의거해 집체경제조직의 직능을 대행할 경우 집체자산과 구성원 권익과 관련된 사안은 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결정한다.

제66조(기존 등기의 효력 확인)

본 법률 실시 이전에 이미 국가규정에 따라 등기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본 법률 실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67조(집체재산권제도 개혁과의 연관)

본 법률 실시 이전에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한 구성원 인정은 본 법률 실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8조(실시 일자)

본 법률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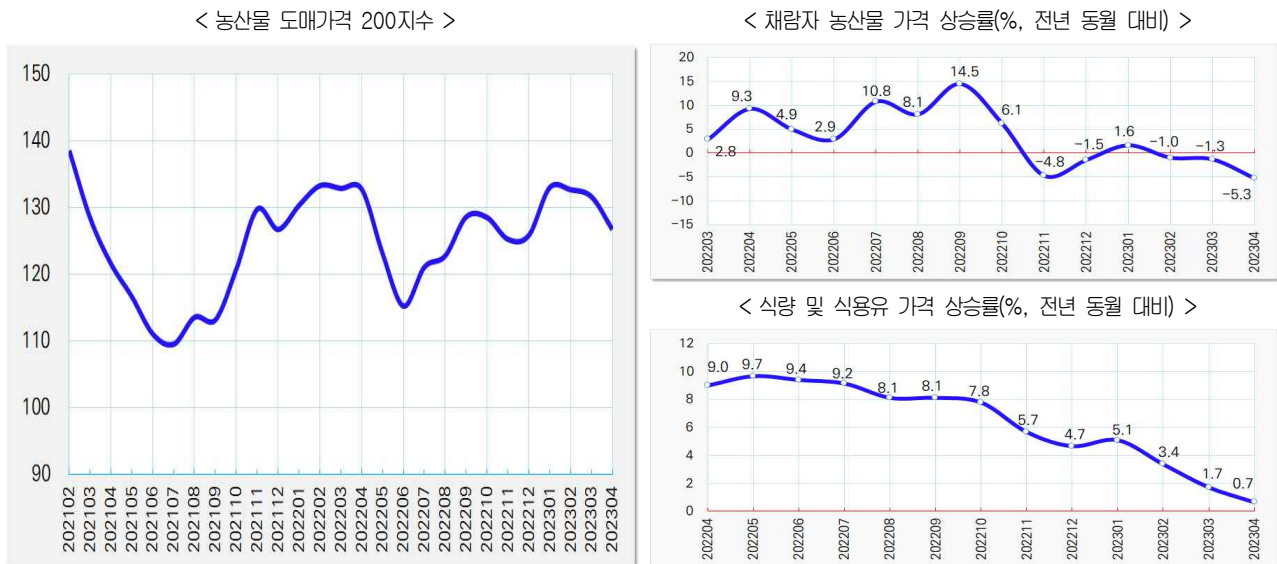
가격 동향



도매시장가격³⁾

- 2023년 4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26.8로 3월 대비 3.7% 하락, 전년 동월 대비 4.5% 하락
 - 채람자(菜篮子) 농산물: 전월 대비 4.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5.3% 하락
 - 식량 및 식용유: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 농산물 품목별 3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요 품목은 토마토(11.6%), 복숭아(10.4%), 포도(9.3%), 마늘(6.8%), 감귤(6.7%), 감(5.9%) 임
 - 주요 가격 하락 품목은 오이(-27.2%), 딸기(-16.7%), 양배추(-15.5%), 쪽파(-12.9%), 팽이버섯(-12.4%), 대파(-11.2%)

3)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표 2〉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22년 12월 ~ 2023년 4월)

단위: 원, %

품목		2022년	2023년				4월 증감률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9,387	19,428	20,009	20,199	20,587	1.92	3.59
	콩(1kg)	1,515	1,484	1,474	1,527	1,571	2.86	3.01
엽근 채소	배추(10kg)	2,247	2,277	2,319	2,274	2,362	3.88	-57.09
	무(18kg)	5,549	5,884	5,453	5,355	5,462	2.00	-35.17
	양배추(8kg)	2,347	2,923	3,471	3,289	2,781	-15.46	-30.04
	당근(20kg)	9,062	9,145	9,574	9,701	10,024	3.33	-21.53
	감자(20kg)	10,882	11,165	12,305	12,619	13,174	4.39	24.87
양념 채소	건고추(600g)	4,127	4,126	4,130	4,153	4,158	0.13	2.36
	양파(kg)	449	465	473	466	436	-6.48	-27.62
	마늘(kg)	1,207	1,263	1,283	1,266	1,352	6.81	-1.43
	대파(kg)	784	826	759	580	515	-11.24	-59.04
	쪽파(kg)	1,196	1,601	1,642	1,203	1,049	-12.85	-8.44
과일	사과(부사, 15kg)	23,537	24,377	24,656	25,239	25,666	1.69	23.72
	배(풍수, 15kg)	20,752	25,258	25,441	23,221	24,312	4.70	23.90
	복숭아(kg)	1,772	1,844	1,702	2,128	2,349	10.38	-22.06
	포도(거봉, 5kg)	9,916	9,989	10,238	11,321	12,377	9.32	7.09
	감귤(만다린, kg)	1,083	1,061	982	932	995	6.71	6.49
	감(10kg)	10,771	10,449	10,360	11,729	12,425	5.94	-3.75
과채	딸기(2kg)	11,083	11,146	10,648	8,360	6,967	-16.66	-13.11
	토마토(10kg)	8,152	8,649	9,013	10,516	11,734	11.58	-2.44
	오이(kg)	1,164	1,451	1,315	1,076	784	-27.20	-15.78
	수박(kg)	890	1,060	1,156	1,385	1,285	-7.25	-13.24
축산물	쇠고기(kg)	14,384	14,274	14,421	14,562	14,697	0.93	-1.00
	돼지고기(kg)	5,478	4,407	3,959	3,905	3,760	-3.71	5.73
	닭고기(kg)	3,539	3,441	3,450	3,485	3,501	0.47	1.39
버섯	느타리버섯(2kg)	2,552	2,788	2,973	2,789	2,873	3.00	-2.24
	새송이버섯(2kg)	3,053	3,324	3,299	3,077	3,084	0.23	2.80
	팽이버섯(2kg)	2,786	3,147	3,643	2,941	2,577	-12.36	1.32
	표고버섯(2kg)	4,368	4,646	4,735	4,688	4,743	1.19	6.77
임산물	밤(kg)	2,299	2,145	2,272	1,972	2,009	1.84	8.29
	대추(kg)	2,325	2,031	2,180	2,243	2,293	2.21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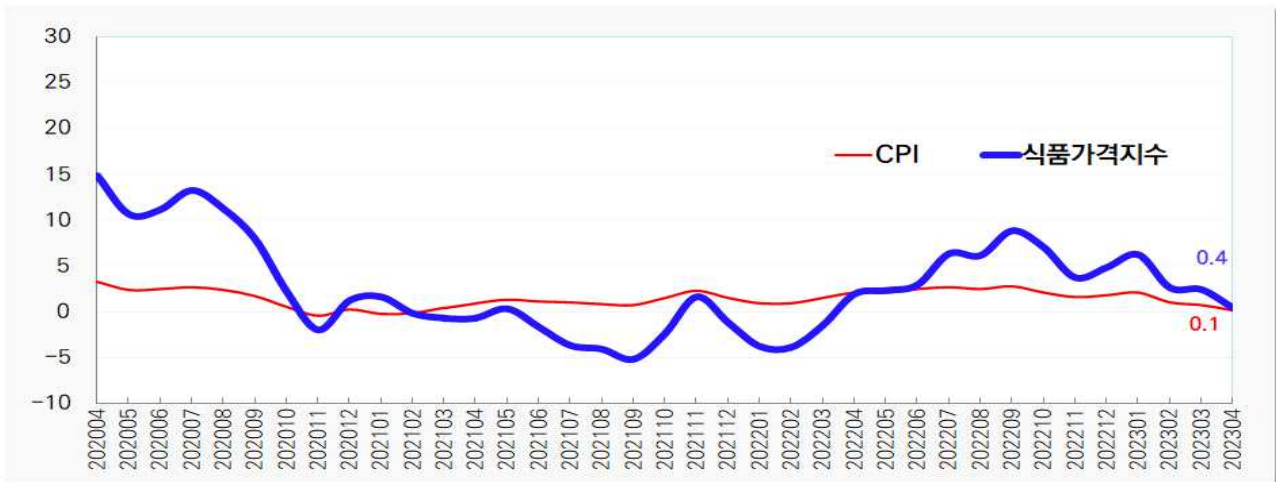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소비자물가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1.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
 - 4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과일과 육류가 주도(각각 5.3%, 2.2% 상승)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자료: 中国国家统计局(<http://www.stats.gov.cn>)

〈표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3.1	'23.2	'23.3	'23.4	'23.1	'23.2	'23.3	'23.4
소비자물가지수(CPI)	0.8	-0.5	-0.3	-0.1	2.1	1.0	0.7	0.1
◦ 식품·담배 및 주류	2.0	-1.3	-0.9	-0.6	4.7	2.1	2.1	0.8
식품	2.8	-2.0	-1.4	-1.0	6.2	2.6	2.4	0.4
- 식량	0.0	0.1	-0.1	-0.2	2.7	2.7	2.0	1.1
- 육류	-5.3	-5.9	-2.4	-1.9	6.6	1.9	4.6	2.2
- 조란(鸡蛋)	-2.1	-3.6	0.2	-0.2	8.4	7.8	7.8	1.2
- 수산물	5.5	-1.5	-0.8	0.5	4.8	-1.5	-0.2	-0.9
- 신선채소	19.6	-4.4	-7.2	-6.1	6.7	-3.8	-11.1	-13.5
- 신선과일	9.2	-1.2	0.4	-0.7	13.1	8.5	11.5	5.3
◦ 의류 및 복장	-0.5	-0.1	0.5	-0.1	0.5	0.7	0.8	0.9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0	0.0	-0.5	0.0	1.6	1.4	0.7	0.1
◦ 의료보건	0.3	0.2	0.1	0.1	0.8	1.0	1.0	1.0
◦ 교통 및 통신	0.2	-0.5	-0.4	-0.4	2.0	0.1	-1.9	-3.3
◦ 교육·문화 및 오락	1.3	-0.8	-0.1	0.5	2.4	1.2	1.4	1.9
◦ 주택(거주)	0.0	0.1	0.0	0.0	-0.1	-0.1	-0.3	-0.2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1.1	-0.3	0.8	1.0	3.1	2.6	2.5	3.5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http://www.stats.gov.cn>)

무역 동향



농식품 수출입

- 2023년 4월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은 176.1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
 - (농산물) 수입액은 136.0억 달러(77.2%) 전월 대비 1.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
 - * 수입액 상위 5개 품목류: 두류(35.6%), 과일류(15.2%), 곡류(12.7%), 식물성유지(12.7%), 채유종실(5.7%) → CR₅ 78.4%
 - (임산물) 수입액은 1.4억 달러(0.8%)로 전월 대비 6.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6.6% 증가
 - * 수입액 상위 3개 품목류: 과실견과류(74.5%), 임산물 기타(21.8%), 락과 수지류(1.7%) → CR₃ 98.0%
 - (축산물) 수입액은 38.8억 달러(22.0%)로 전월 대비 9.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 * 수입액 상위 5개 품목류: 포유가축 육류(44.0%), 낙농품(29.3%), 가금육류(9.7%), 모·수모류(6.2%), 원피류(3.0%) → CR₅ 92.1%
 -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류) 두류(27.5%), 과일류(11.7%), 곡류(9.8%), 포유가축 육류(9.7%), 식물성유지(7.1%), 낙농품(6.4%), 채유종실(4.4%), 기타조제농산품(3.1%), 가금육류(2.1%), 주류(2.1%) → CR₁₀ 84.0%
 - (수입액 상위 10개 세부 품목) 대두(26.4%), 두리안(6.2%), 쇠고기(5.6%), 밀(3.6%), 돼지고기(3.0%), 조제분유(2.7%), 혼합조제식료품(2.6%), 유채(2.4%), 유채유(2.2%), 보리(2.1%) → CR₁₀ 56.9%

〈표 4〉 중국의 농식품 수입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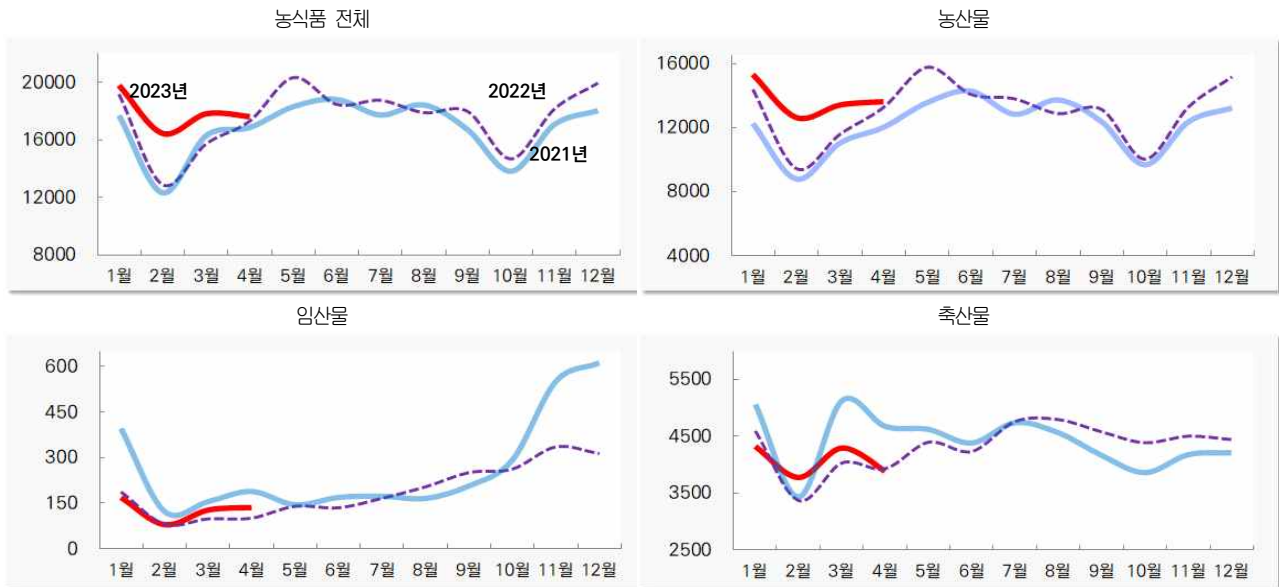
구분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총액	17,815	(100.0)	17,610	(100.0)	71,667	(100.0)	-1.2	1.8	10.1
- 가공	5,868	(100.0)	5,437	(100.0)	21,727	(100.0)	-7.3	5.1	4.1
- 신선	11,947	(100.0)	12,173	(100.0)	49,940	(100.0)	1.9	0.5	13.0
농산물	13,391	(75.2)	13,597	(77.2)	54,890	(76.6)	1.5	2.5	12.7
- 가공	4,079	(69.5)	3,805	(70.0)	15,326	(70.5)	-6.7	4.6	8.2
- 신선	9,312	(77.9)	9,791	(80.4)	39,564	(79.2)	5.1	1.7	14.5
임산물	128	(0.7)	136	(0.8)	513	(0.7)	6.1	36.6	11.0
- 가공	38	(0.6)	33	(0.6)	118	(0.5)	-11.6	8.7	10.7
- 신선	90	(0.8)	102	(0.8)	395	(0.8)	13.4	49.1	11.1
축산물	4,296	(24.1)	3,878	(22.0)	16,265	(22.7)	-9.7	-1.2	2.2
- 가공	1,752	(29.9)	1,598	(29.4)	6,283	(28.9)	-8.8	6.1	-4.9
- 신선	2,544	(21.3)	2,279	(18.7)	9,982	(20.0)	-10.4	-5.8	7.3

주: 농식품의 범위는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며, 중국 해관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상 HS 8단위 세번 1,169개 품목(2023년도 기준)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농림축산식품 품목별 코드(AG코드) 분류를 참고해 중국 기준 HS 8단위 1,169개 품목을 농산물 39개 품목류, 축산물 22개 품목류, 임산물 8개 품목류로 분류함.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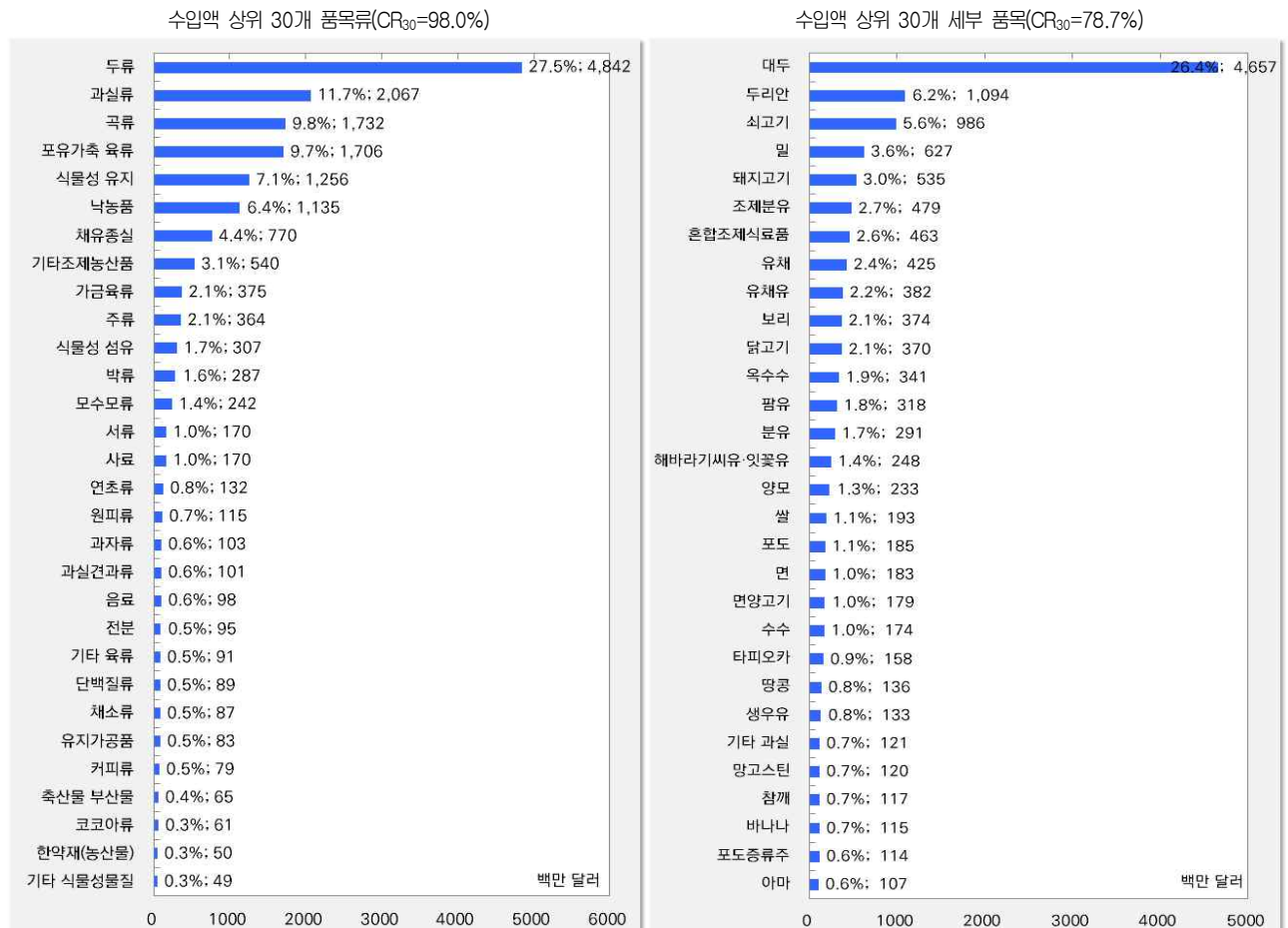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연도별·월별 농식품 수입액 추이(2021.1~2023.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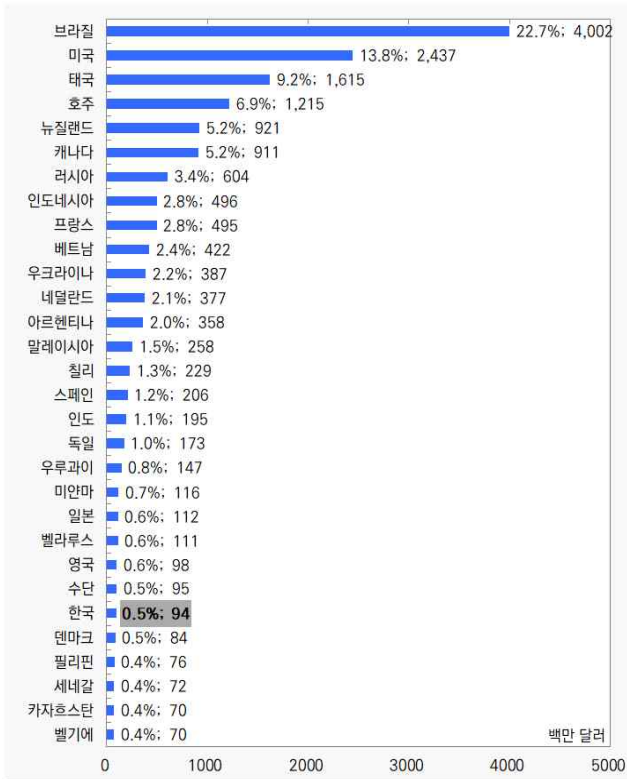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의 수입액 상위 30개 농식품 품목류 및 세부 품목(2023년 4월)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그림 5〉 중국의 농식품 수입 대상국 순위(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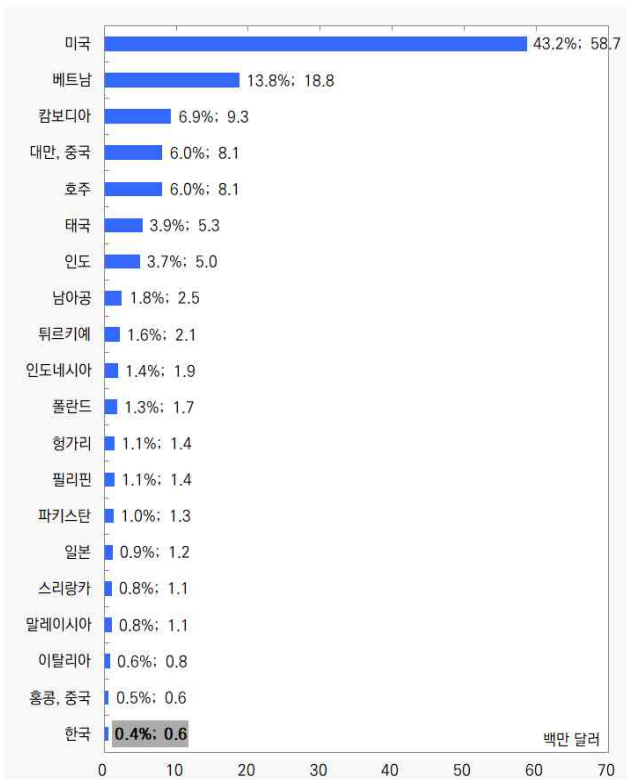
수입액 상위 30위 수입대상국(농식품 전체, CR₃₀=93.4%)



수입액 상위 20위 수입대상국(농산물, CR₂₀=89.2%)



수입액 상위 20위 수입대상국(임산물, CR₂₀=96.6%)



수입액 상위 20위 수입대상국(축산물, CR₂₀=96.5%)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표 5〉 중국의 농산물 품목별 수입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백만 달러, %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곡류	1,864.2	1,731.5	7,568.5	-7.1	-6.2	1.2
2	서류	373.9	170.4	889.6	-54.4	-38.0	6.6
3	두류	4,701.3	4,841.9	20,523.4	3.0	-13.3	12.2
4	전분	170.7	95.4	575.7	-44.1	-64.7	-35.3
5	채유종실	924.0	769.7	3,065.8	-16.7	92.8	106.0
6	과실류	1,160.4	2,067.1	6,666.8	78.1	62.6	16.0
7	기타과실류	54.6	38.5	200.2	-29.4	-49.4	-9.4
8	채소류	146.5	86.8	383.4	-40.8	-30.7	31.2
9	화훼류	14.7	16.1	55.8	9.4	59.9	20.0
10	버섯류(농산물)	0.5	0.3	1.5	-49.9	-56.2	-60.5
11	기타 산식물	1.2	1.1	3.7	-10.4	53.0	51.1
12	식물성유지	1,276.1	1,256.1	4,620.0	-1.6	75.7	57.9
13	유지가공품	108.2	83.3	371.0	-23.0	-32.8	-14.4
14	농산물 납류	1.5	2.5	7.6	72.4	-5.5	-40.5
15	식물성 액즙	24.3	29.1	85.8	19.8	22.1	-8.1
16	박류	327.2	287.4	1,115.5	-12.2	59.3	12.3
17	사료	172.4	170.1	687.3	-1.3	16.7	17.0
18	기타 식물성 물질	60.9	49.4	193.1	-18.8	-7.1	-5.7
19	기타농산부산물	1.2	0.9	3.7	-24.3	15.2	-3.3
20	빵류제조용	5.6	4.1	17.6	-27.0	4.0	-14.7
21	효모류	2.9	2.2	7.9	-23.8	58.1	29.0
22	소오스류	18.5	18.6	65.6	0.6	20.5	8.6
23	향신료	6.7	3.0	17.4	-54.5	-59.9	-0.8
24	지방성물질	41.4	34.8	139.6	-15.9	-66.0	-59.5
25	식물성재료	2.4	2.2	6.2	-5.9	-63.7	-76.2
26	커피류	70.9	79.5	277.4	12.0	5.3	7.3
27	코코아류	58.3	61.3	243.7	5.2	10.9	5.1
28	차류	10.1	13.4	36.9	33.2	85.5	-9.5
29	연초류	310.5	132.2	940.9	-57.4	23.1	137.3
30	인삼류	19.1	17.7	57.9	-7.3	16.7	43.1
31	한약재(농산물)	52.2	50.3	146.9	-3.5	104.5	47.2
32	주류	323.6	363.6	1,264.8	12.4	16.4	2.3
33	당류	36.4	39.2	480.3	7.8	-81.1	-29.9
34	음료	83.4	98.3	309.4	17.8	12.8	8.3
35	과자류	106.4	102.7	376.1	-3.4	5.2	2.2
36	면류	30.1	26.1	119.2	-13.4	0.9	25.0
37	기타조제 농산품	573.6	540.1	2,073.2	-5.8	15.2	26.6
38	잡사류	4.6	3.1	13.9	-32.4	-48.6	-24.6
39	식물성 섬유	251.0	306.6	1,276.6	22.1	-42.7	-44.3
합계		13,391.2	13,596.8	54,889.9	1.5	2.5	12.7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표 6〉 중국의 축산물·임산물 품목류별 수입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축 산 물	1	포유가축류	89.0	31.1	205.0	-65.1	56.7	-32.7
	2	가금류	4.2	1.7	8.0	-60.0	-43.7	-43.8
	3	기타포유류	0.7	0.6	3.3	-19.3	-35.9	9.5
	4	조류 기타	0.2	0.0	0.2	-100.0	n.a.	-94.0
	5	파충류(reptilia)	0.0	0.0	0.1	36.3	n.a.	1,267.1
	6	양서류(Amphibian)	0.0	0.0	0.0	n.a.	n.a.	n.a.
	7	곤충류	0.0	0.0	0.1	69.9	104.4	92.5
	8	기타 산동물	0.0	0.0	0.0	-52.0	-5.9	-30.1
	9	포유 가축 육류	1,874.0	1,705.6	7,668.0	-9.0	-12.8	4.4
	10	가금육류	410.7	374.8	1,481.6	-8.7	17.7	25.2
	11	기타 육류	85.7	91.3	350.9	6.5	24.1	35.9
	12	동물성 유지	6.6	10.3	29.5	57.1	46.3	15.7
	13	동물성 난	0.3	0.3	0.9	-12.9	368.1	214.5
	14	골류	2.7	3.5	12.6	31.0	45.8	29.5
	15	한약재(축산물)	9.5	9.4	25.7	-0.8	39.4	-13.3
	16	기타 축산물 부산물	1,327.4	1,135.3	4,681.1	-14.5	5.2	-5.5
	17	낙농품	70.3	64.7	238.8	-8.0	53.9	48.7
	18	난류	0.0	0.0	0.0	n.a.	n.a.	n.a.
	19	단백질류	100.1	89.4	385.5	-10.6	-4.7	15.2
	20	모.수모류	202.1	241.9	718.7	19.7	17.0	-6.9
	21	원피류	111.4	115.1	450.3	3.4	0.5	-11.6
	22	생모피류	1.3	2.5	4.5	93.5	24.5	-15.1
합계			4,296.1	3,877.6	16,264.7	-9.7	-1.2	2.2
임 산 물	1	수목류	1.6	1.0	4.0	-38.2	-30.7	-23.1
	2	산채류	0.3	0.3	1.1	0.3	-39.1	95.8
	3	버섯류(임산물)	0.1	0.0	0.1	-100.0	n.a.	n.a.
	4	과실·견과류	88.3	101.1	389.6	14.6	51.5	11.4
	5	락과 수지류	2.1	2.3	10.7	6.0	-44.8	-21.9
	6	죽재류	0.0	0.1	0.2	6.3	74.2	74.0
	7	등나무류	1.6	1.4	5.0	-14.4	-55.2	-26.8
	8	임산물 기타	33.9	29.6	101.9	-12.6	26.1	18.9
합계			128.0	135.7	512.6	6.1	36.6	11.0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 2023년 4월 중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55.5억 달러로 전월 대비 9.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
 - (농산물) 수출액은 47.3억 달러(85.2%)로 전월 대비 10.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 * 수출액 상위 5개 품목류: 채소류(23.2%), 과일류(8.2%), 기타조제농산물(7.9%), 사료(5.4%), 소오스류(4.9%) → CR₅ 49.6%
 - (임산물) 수출액은 2.6억 달러(4.6%)로 전월 대비 1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
 - * 수출액 상위 3개 품목류: 과일견과류(46.1%), 임산물 기타(32.7%), 버섯류(임산물)(10.7%) → CR₃ 89.5%
 - (축산물) 수출액은 5.6억 달러(10.1%)로 전월 대비 0.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
 - * 수출액 상위 5개 품목류: 가금육류(33.2%), 기타육류(20.2%), 단백질류(15.0%), 포유가축류(6.9%), 포유가축육류(5.9%) → CR₅ 81.1%
 -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류) 채소류(19.8%), 과일류(7.0%), 기타조제농산물(6.8%), 사료(4.6%), 소오스류(4.1%), 과자류(3.9%), 버섯류(농산물)(3.6%), 가금육류(3.4%), 식물성 액즙(3.0%), 채유종실(2.9%) → CR₁₀ 59.1%
 - (수출액 상위 10개 세부 품목) 혼합조제식료품(5.4%), 기타소오스제품(3.8%), 마늘(3.5%), 채소혼합물(3.3%), 기타유지가공품(2.7%), 기타버섯(2.6%), 닭고기(2.6%), 기타식물성액즙(2.6%), 토마토(2.4%), 기타 채소(2.2%) → CR₁₀ 31.2%

〈표 7〉 중국의 농식품 수출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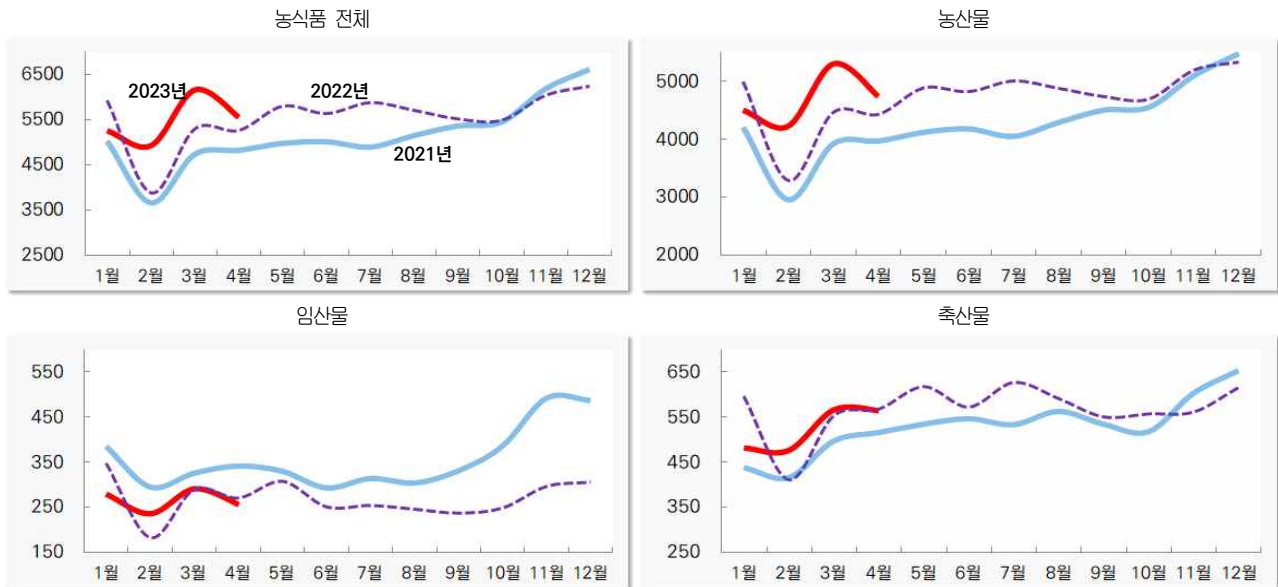
구분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총액	6,155	(100.0)	5,554	(100.0)	21,901	(100.0)	-9.8	5.6	7.5
- 가공	2,783	(100.0)	2,690	(100.0)	9,985	(100.0)	-3.4	5.1	4.9
- 신선	3,372	(100.0)	2,864	(100.0)	11,916	(100.0)	-15.1	6.1	9.9
농산물	5,298	(86.1)	4,734	(85.2)	18,753	(85.6)	-10.6	7.0	9.4
- 가공	2,544	(91.4)	2,471	(91.9)	9,124	(91.4)	-2.9	7.6	7.3
- 신선	2,754	(81.7)	2,264	(79.0)	9,629	(80.8)	-17.8	6.4	11.4
임산물	292	(4.7)	256	(4.6)	1,064	(4.9)	-12.1	-5.1	-2.3
- 가공	101	(3.6)	91	(3.4)	346	(3.5)	-9.8	-13.9	-15.8
- 신선	191	(5.7)	165	(5.8)	719	(6.0)	-13.3	0.6	5.9
축산물	565	(9.2)	563	(10.1)	2,084	(9.5)	-0.3	-0.8	-2.2
- 가공	138	(4.9)	128	(4.8)	515	(5.2)	-7.1	-19.6	-15.7
- 신선	428	(12.7)	435	(15.2)	1,569	(13.2)	1.8	6.4	3.3

주: 농식품의 범위는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며, 중국 해관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상 HS 8단위 세번 1,158개 품목(2022년도 기준)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림축산식품 품목별 코드(AG코드) 분류를 참고해 중국 기준 HS 8단위 1,158개 품목을 농산물 39개 품목류, 축산물 22개 품목류, 임산물 8개 품목류로 분류함.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그림 6〉 중국의 연도별·월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2021.1~2023.4)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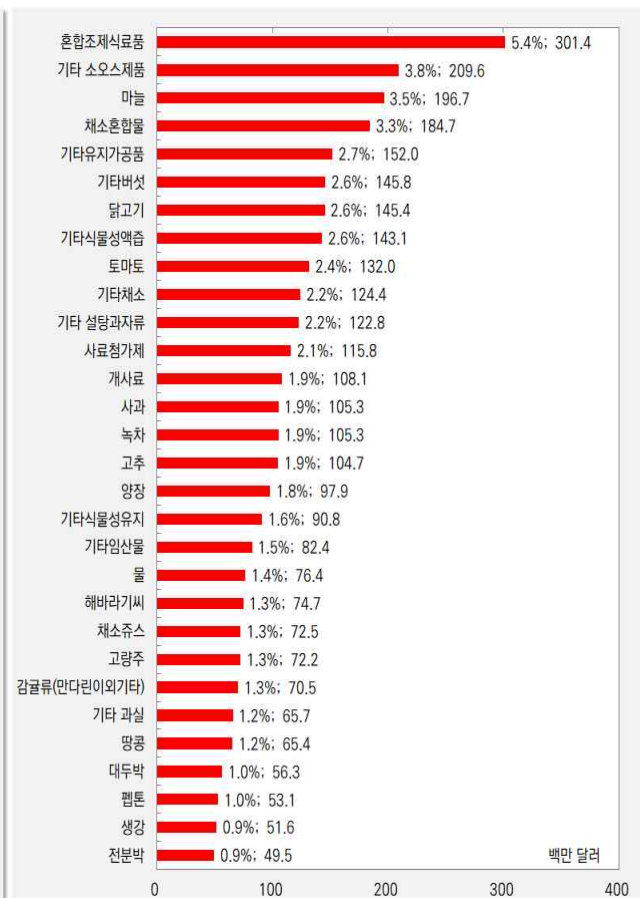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그림 7〉 중국의 수출액 상위 30개 농식품 품목류 및 세부 품목(2023년 4월)

수출액 상위 30개 품목류(CR₃₀=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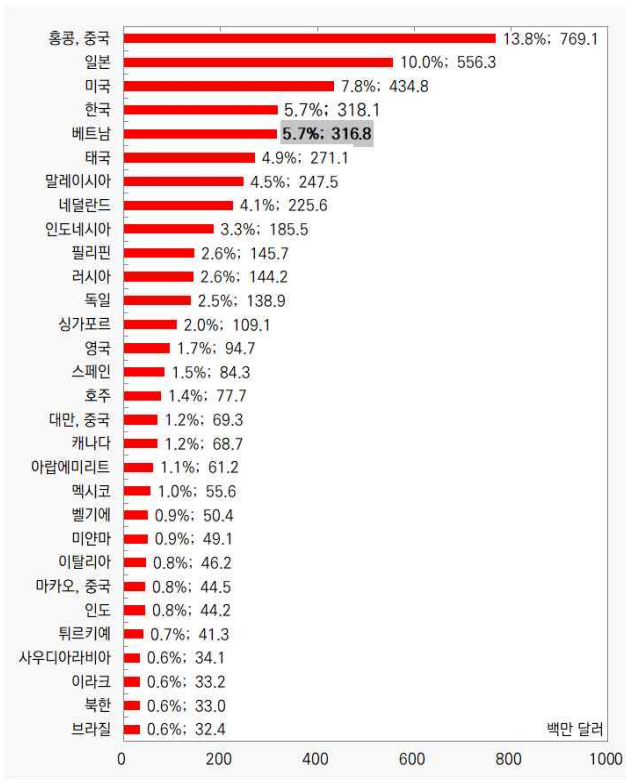
수출액 상위 30개 세부 품목(CR₃₀=60.8%)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그림 8〉 중국의 농식품 수출 대상국 순위(2023년 4월)

수출액 상위 30위 수출대상국(농식품 전체, CR₃₀=86.1%)



수출액 상위 20위 수출대상국(농산물, CR₂₀=78.9%)



수출액 상위 20위 수출대상국(임산물, CR₂₀=85.3%)



수출액 상위 20위 수출대상국(축산물, CR₂₀=86.2%)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표 8〉 중국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백만 달러, %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곡류	101.9	92.2	399.6	-9.5	-31.8	-6.5
2	서류	41.7	36.8	160.7	-11.9	53.3	52.4
3	두류	106.2	83.4	338.8	-21.4	-0.8	5.5
4	전분	6.8	7.2	28.0	5.0	-69.9	-59.3
5	채유종실	194.9	162.6	697.8	-16.6	-8.5	-0.5
6	과실류	504.1	389.7	1,799.9	-22.7	-6.8	-4.2
7	기타과실류	74.5	64.0	261.6	-14.1	-3.5	0.1
8	채소류	1,272.4	1,097.7	4,397.6	-13.7	20.4	19.0
9	화훼류	30.4	28.6	112.9	-6.1	7.8	-2.5
10	버섯류(농산물)	279.7	198.8	996.7	-28.9	8.8	37.7
11	기타 산식물	3.4	3.4	12.8	1.2	-3.4	-21.3
12	식물성유지	124.2	120.6	424.4	-2.9	75.0	15.5
13	유지가공품	186.3	152.5	639.3	-18.1	-28.2	-4.7
14	농산물 납류	0.9	1.3	3.0	49.8	1,257.7	42.2
15	식물성 액즙	136.6	164.9	645.6	20.7	6.7	1.4
16	박류	78.9	113.7	313.7	44.1	60.0	1.0
17	사료	263.1	256.1	944.8	-2.7	-1.9	-10.1
18	기타 식물성 물질	30.3	31.3	122.5	3.4	130.6	134.9
19	기타농산부산물	5.6	5.0	19.5	-11.7	-15.6	-14.3
20	빵류제조용	40.4	52.0	149.1	28.6	56.2	35.1
21	효모류	39.1	41.0	145.8	5.0	37.3	20.7
22	소오스류	245.6	229.8	866.9	-6.4	27.4	27.2
23	향신료	8.9	10.0	28.6	11.6	38.3	-8.6
24	지방성물질	0.1	0.1	0.3	5.3	n.a.	211.7
25	식물성재료	1.6	1.8	5.4	13.8	-15.9	-45.6
26	커피류	10.4	8.6	39.8	-17.9	-74.2	-54.8
27	코코아류	27.3	23.1	105.5	-15.4	8.3	-4.0
28	차류	170.4	137.8	556.2	-19.2	-12.1	-14.4
29	연초류	67.2	57.8	219.2	-13.9	-6.2	19.8
30	인삼류	6.3	8.6	29.3	35.6	132.4	29.8
31	한약재(농산물)	138.7	102.1	445.0	-26.4	8.4	17.9
32	주류	167.4	162.1	564.1	-3.2	-1.3	31.0
33	당류	78.5	68.6	284.2	-12.6	0.2	22.3
34	음료	102.2	97.1	319.4	-5.0	10.2	40.7
35	과자류	218.3	218.7	762.1	0.2	17.0	18.5
36	면류	109.3	103.5	385.9	-5.3	3.4	0.9
37	기타조제 농산품	395.4	375.3	1,419.7	-5.1	16.9	7.8
38	잠사류	28.4	24.8	100.4	-12.9	-6.9	12.6
39	식물성 섬유	0.5	1.9	7.4	277.4	-13.0	-32.1
합계		5,298.0	4,734.2	18,753.3	-10.6	7.0	9.4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표 9〉 중국의 축산물·임산물 품목류별 수출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축 산 물	1	포유가축류	38.7	38.6	126.1	-0.2	4.7	14.4
	2	가금류	0.1	0.1	0.6	-2.2	51.6	57.7
	3	기타포유류	1.6	2.0	6.9	24.1	28.6	-1.1
	4	조류 기타	0.0	0.0	0.0	n.a.	n.a.	n.a.
	5	파충류(reptilia)	0.8	0.3	3.5	-63.2	166.3	189.7
	6	양서류(Amphibian)	0.0	0.0	0.0	n.a.	-100.0	-100.0
	7	곤충류	0.0	0.0	0.1	47.1	1,234.8	770.4
	8	기타 산동물	0.1	0.1	0.5	-9.2	221.4	102.5
	9	포유 가축 육류	38.1	33.3	142.9	-12.7	-10.9	-10.2
	10	가금육류	182.2	187.0	674.8	2.6	4.7	-0.3
	11	기타 육류	103.7	113.9	375.9	9.8	18.0	11.7
	12	동물성 유지	6.7	6.7	25.7	-0.5	4.0	-19.4
	13	동물성 납	2.7	3.9	12.1	43.2	-18.3	-18.2
	14	꿀류	0.0	0.0	0.0	n.a.	106.6	106.6
	15	한약재(축산물)	1.2	2.2	5.8	82.7	-4.4	-11.4
	16	기타 축산물 부산물	20.4	19.1	78.4	-6.4	7.1	26.1
	17	낙농품	30.8	29.3	123.1	-4.9	-6.0	-9.5
	18	난류	30.4	29.2	109.5	-3.7	16.9	28.4
	19	단백질류	94.2	84.4	342.8	-10.4	-28.3	-23.4
	20	모.수모류	11.0	11.2	44.5	2.1	48.3	20.5
	21	원피류	2.4	2.0	10.5	-14.8	-53.3	-39.1
	22	생모피류	0.0	0.0	0.1	3.8	n.a.	210.6
합계			565.2	563.3	2,083.7	-0.3	-0.8	-2.2
임 산 물	1	수목류	1.8	1.7	6.0	-6.0	19.3	9.2
	2	산채류	20.0	18.0	77.8	-9.8	-23.6	-17.6
	3	버섯류(임산물)	34.4	27.5	113.8	-20.2	-29.9	-12.0
	4	과실·견과류	134.4	118.0	520.9	-12.2	17.9	15.9
	5	락과 수지류	1.6	0.6	4.0	-60.4	-52.6	-1.8
	6	죽재류	8.1	5.5	25.8	-32.9	-22.6	-3.9
	7	등나무류	0.7	1.2	4.2	55.4	-8.7	2.1
	8	임산물 기타	90.5	83.8	311.7	-7.4	-12.8	-17.0
합계			291.6	256.3	1,064.2	-12.1	-5.1	-2.3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식량 수출입

- 2023년 4월 주요 곡물(쌀, 밀, 옥수수, 보리, 수수) 수출량은 123.3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9%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8.1% 감소
 - 품목별 수출량: 쌀 65.1천 톤(52.8%), 보리 45.8천 톤(37.1%), 밀 11.6천 톤(9.4%), 옥수수 0.8천 톤(0.6%), 수수 0.03천 톤(0.03%)
 - 쌀의 수출량은 전월에 비해 13.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74.1% 감소. 품종별 수출량을 보면 중단립종 백미(HS 1006.3080)가 48.5천 톤으로 74.5% 차지
 - 5대 곡물 옥수수와 보리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량이 증가 (각각 601.2%, 76.9%) 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감소. 쌀의 감소율이 7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수 40.0%, 밀 33.7% 순
 - 쌀 수출량 상위 10위 대상국: 파푸아뉴기니(32.5%), 북한(18.3%), 한국(17.1%), 몽골(7.7%), 솔로몬 제도(5.6%), 바누아투(3.7%), 파키스탄(3.4%), 러시아(2.7%), 홍콩(중국)(2.2%), 키리바시(1.7%) → CR₁₀ 94.8%
 - * 대 한국 쌀 수출 물량은 11,106톤, 이 중 중단립종 현미(HS 1006.2080) 11,106톤, 중단립종 백미(HS 1006.3080) 0톤

〈표 10〉 중국의 곡물 수출입 추이(2023년 2월 ~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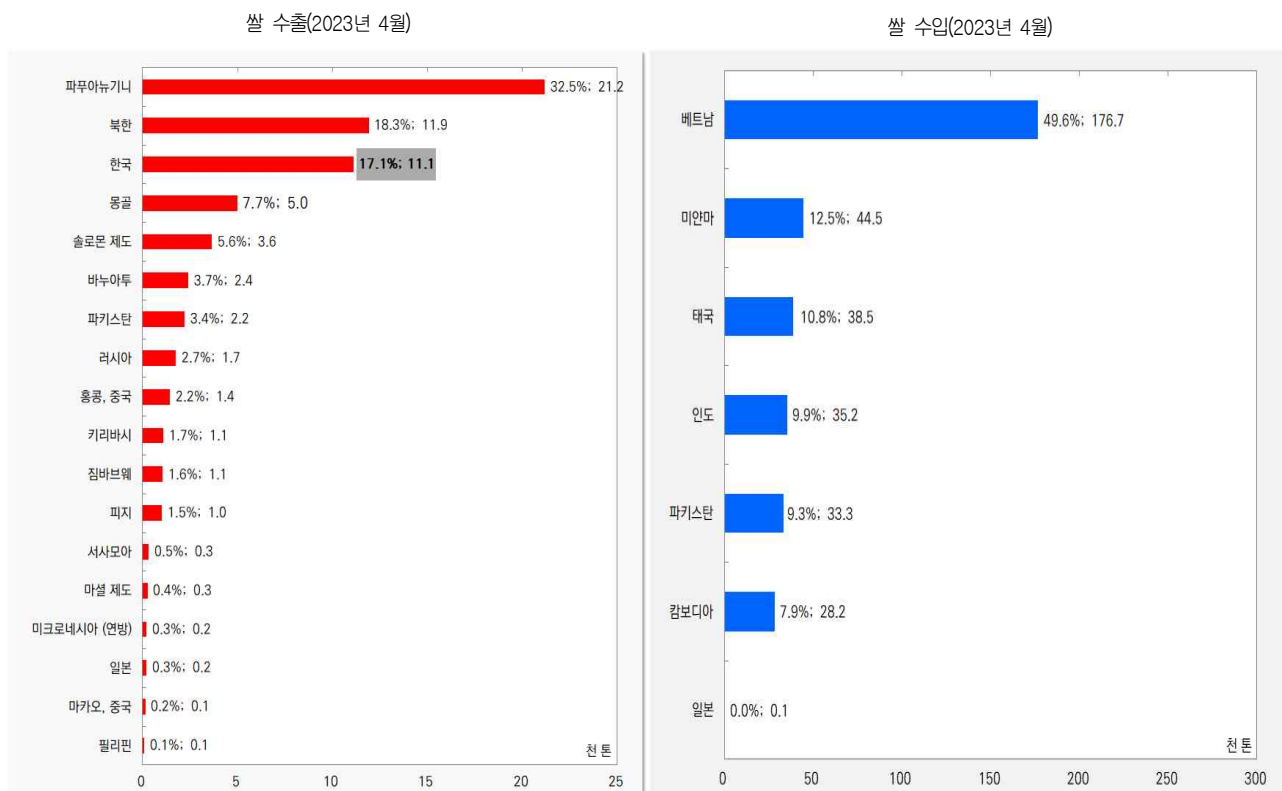
단위: 천 톤, %

구분	품목	2022년	2023년				4월 증감률		
			2월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쌀	2,214.6	38.9	75.6	65.1	297.7	-13.9	-74.1	-56.2
	- 중단립종 백미	1,766.1	16.4	32.4	48.5	200.1	49.5	-78.2	-62.7
	- 장립종 백미	138.0	19.6	28.0	2.9	63.3	-89.5	-77.5	11.2
	밀	146.4	13.6	17.4	11.6	62.6	-33.2	-33.7	24.4
	옥수수	1.4	0.1	0.1	0.8	1.1	544.1	601.2	262.9
	보리	478.8	55.8	36.3	45.8	172.1	26.3	76.9	60.5
	수수	3.6	0.2	0.3	0.03	0.8	-87.3	-40.0	-66.7
	합계	2,844.8	108.5	129.7	123.3	534.3	-4.9	-58.1	-36.4
수입	쌀	6,194.6	356.2	393.0	356.4	1,360.2	-9.3	-40.6	-39.7
	- 중단립종 백미	65.8	19.4	3.0	1.8	32.8	-38.0	-64.3	35.7
	- 장립종 백미	2,555.8	208.5	250.7	242.3	847.4	-3.3	28.3	-13.0
	밀	9,959.3	1,524.6	1,329.0	1,684.2	6,033.1	26.7	141.0	60.9
	옥수수	20,621.0	3,086.2	2,191.8	1,002.7	8,523.5	-54.3	-54.6	-8.4
	보리	5,772.6	463.2	732.9	1,004.2	2,696.6	37.0	24.5	6.4
	수수	10,140.1	121.7	185.5	473.3	985.3	155.1	-42.4	-71.1
	합계	52,687.6	5,551.9	4,832.3	4,520.7	19,598.8	-6.4	-12.0	-7.8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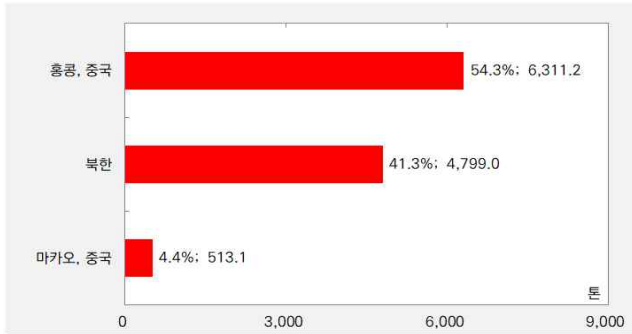
- 2023년 4월 주요 곡물(쌀, 밀, 옥수수, 보리, 수수) 수입량은 452.1만 톤으로 전월에 비해 6.4%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도 12.0% 감소
 - 품목별 수입량: 옥수수 100.3만 톤(22.2%), 밀 168.4만 톤(37.3%), 보리 100.4만 톤(22.2%), 쌀 35.6만 톤(7.9%), 수수 47.3만 톤(10.5%)
 - * 쌀의 품종별 수입량 비중: 장립종 백미(HS 1006.3020) 68.0%, 장립종 채미(HS 1006.4020) 23.3%, 중단립종 채미(HS 1006.4080) 6.9%, 중단립종 백미(HS 1006.3080) 0.5%, 중단립종 쌀가루(HS 1102.9029) 1.1%, 장립종 쌀가루(HS 1102.9021) 0.2%
 - 옥수수 수입국: 우크라이나(81.4%), 미국(5.3%), 브라질(5.2%) → CR₃ 91.9%
 - 보리 수입국: 캐나다(31.6%), 아르헨티나(30.3%), 프랑스(26.9%), 우루과이(6.3%) → CR₄ 95.2%
 - 수수 수입국: 미국(53.4%), 호주(31.6%), 아르헨티나(14.9%) → CR₃ 99.9%
 - 밀 수입국: 호주(63.3%), 캐나다(18.9%), 미국(16.1%), 카자흐스탄(0.7%), 러시아(0.5%) → CR₅ 99.5%
 - 쌀 수입국: 베트남(49.6%), 미얀마(12.5%), 태국(10.8%), 인도(9.9%), 파키스탄(9.3%), 캄보디아(9.7%) → CR₆ 99.98%
 - * 중단립종 백미(HS 1006.3080) 주요 수입국 및 수입량: 베트남 1.834톤, 태국 59톤, 일본 58톤

〈그림 9〉 중국의 5대 곡물 수출입 대상국 순위(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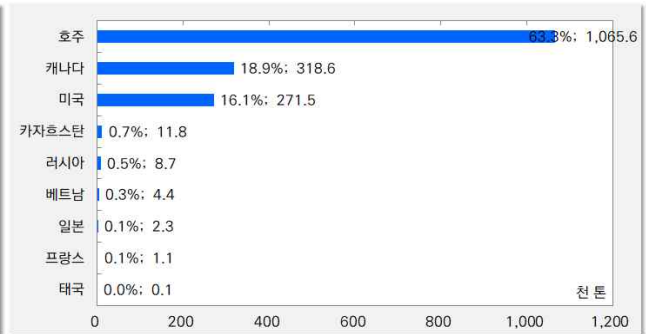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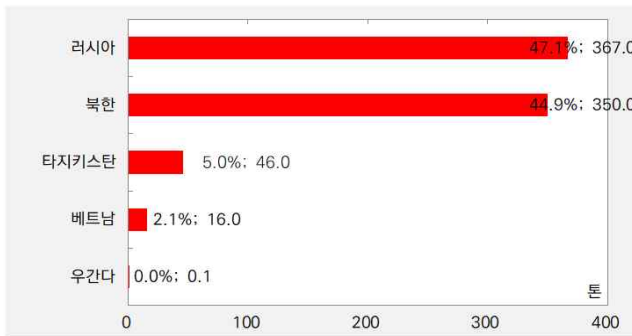
밀 수출(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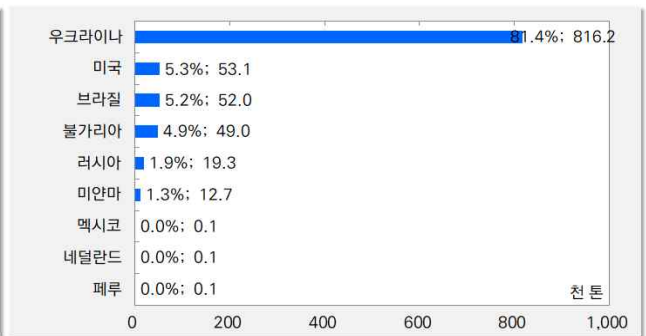
밀 수입(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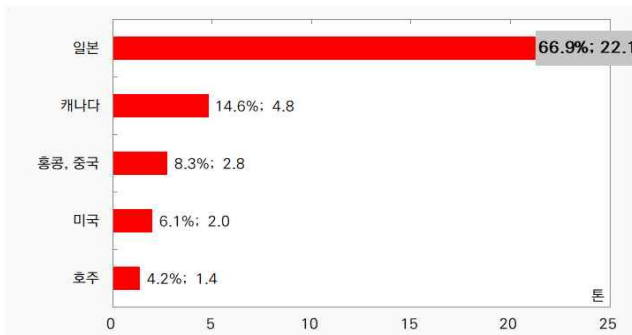
옥수수 수출(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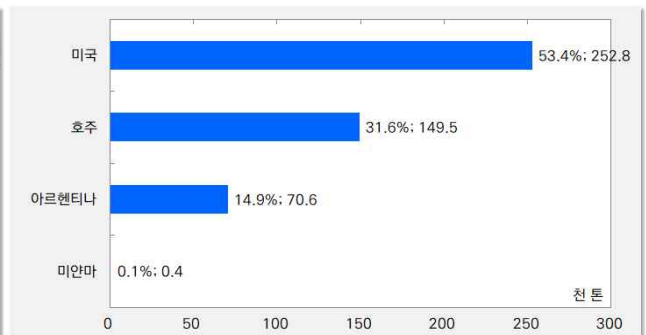
옥수수 수입(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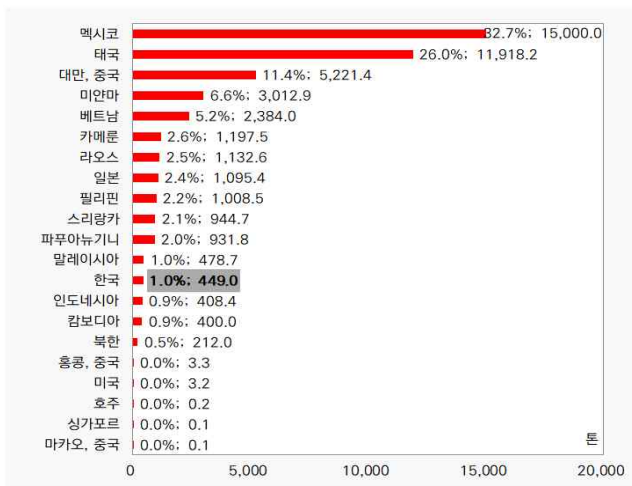
수수 수출(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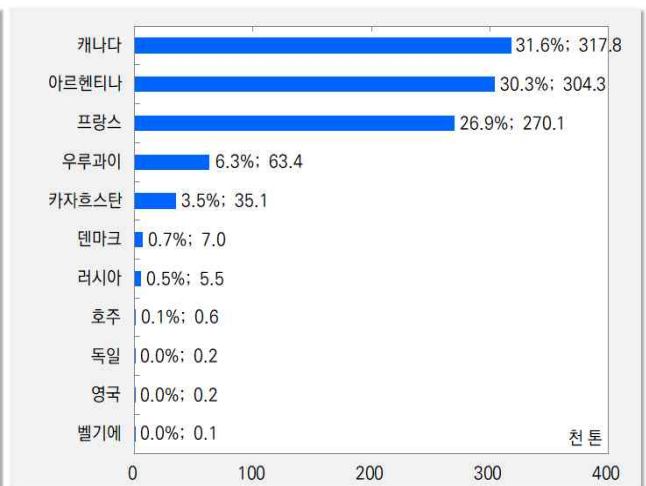
수수 수입(2023년 4월)



보리 수출(2023년 4월)



보리 수입(2023년 4월)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 2023년 4월 대두 수출량은 12.8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32.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8% 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 한국(71.5%)과 일본(18.1%)이 89.5% 차지. 다음으로 러시아(2.2%), 영국(1.6%) 순
- 2023년 4월 대두 수입량은 726.3만 톤으로 전월에 비해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
 - 주요 수입 대상국: 브라질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 다음으로 미국(25.1%), 러시아(1.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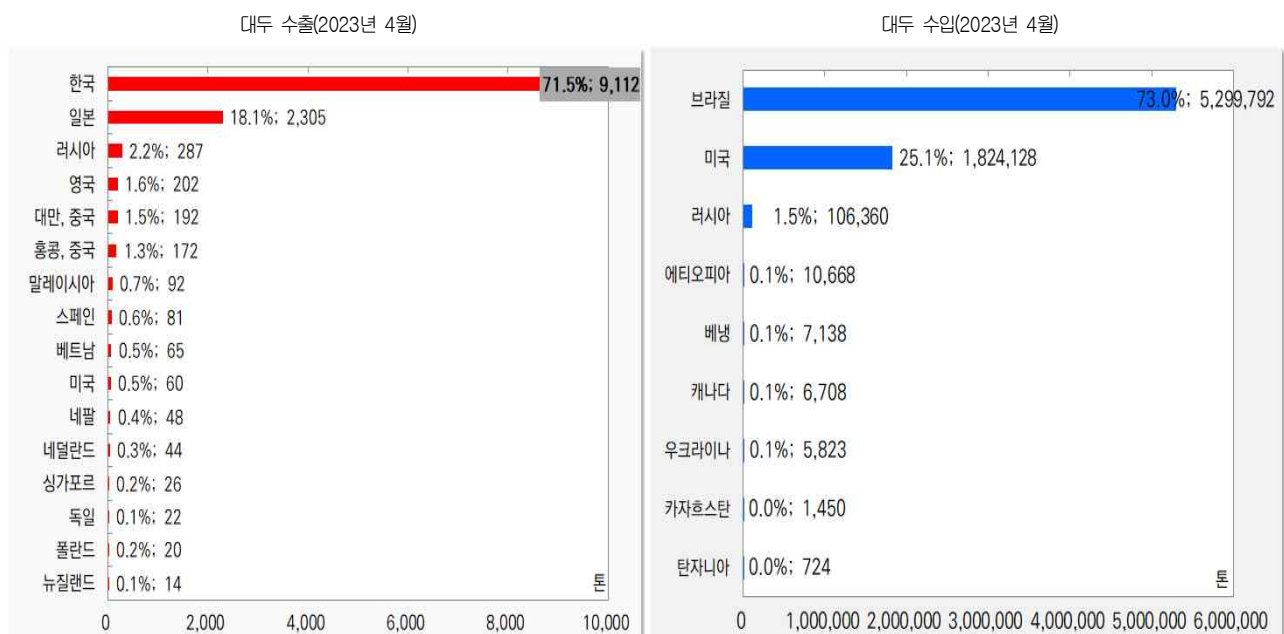
〈표 11〉 중국의 대두 수출입 추이(2023년 2월 ~ 4월)

단위: 톤, %

품목	2022년	2023년				4월 증감률		
		2월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대두 수출	121,244	6,486	5,474	12,750	31,020.2	132.9	24.8	-1.6
- 황대두	113,938	5,767	4,592	11,972	27,767.4	160.7	n.a.	-3.8
HS 1201.9011	113,938	5,767	4,592	11,972	27,767.4	160.7	25.8	-3.8
HS 1201.9019	0	0	0	0	0.0	n.a.	n.a.	-100.0
- 기타	7,306	719	882	778	3,252.8	-11.8	-92.4	22.8
대두 수입	91,102,915	7,041,501	6,853,025	7,262,791	30,288,806.8	6.0	-10.1	6.7
- 황대두	91,102,915	7,041,501	6,853,025	7,262,791	30,288,806.8	6.0	n.a.	6.7
HS 1201.9011	1,694,580	107,737	146,938	134,858	515,357.2	-8.2	-5.3	-43.9
HS 1201.9019	89,408,334	6,933,764	6,706,087	7,127,933	29,773,449.6	6.3	-10.2	8.4
- 기타	0	0	-	-	0.0	n.a.	-100.0	-81.7

주: 황대두(HS 1201.9010)는 2022년부터 HS 1201.9011(유전자변형이 아닌 것)과 HS 1201.9019(기타)로 세분. 기타에는 HS 1201.1000(종자용 대두), HS 1201.9020(비종자용 흑대두), HS 1201.9030(비종자용 녹두), HS 1201.9090(비종자용 기타대두), HS 1208.1000(대두분) 포함.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그림 10〉 중국의 대두 수출입 대상국 순위(2023년 4월)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한중 농식품 수출입

- 2023년 4월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4억 4,076만 달러로 전월 대비 6.3%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7% 증가
 - (농산물) 수입액은 3억 591만 달러(69.4%)로 전월 대비 5.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
 - *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류: 채소류(21.8%), 기타조제농산품(12.1%), 박류(10.2%), 채유종실(5.5%), 두류(5.2%), 사료(4.4%), 곡류(4.1%), 과자류(3.9%), 면류(3.3%), 한약재(농산물)(3.0%) → CR₁₀ 73.6%
 - (임산물) 수입액은 1억 1,728만 달러(26.6%)로 전월 대비 1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
 - *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류: 석제품(39.1%), 기타목재(20.4%), 가구류(19.7%), 합판류(4.1%), 버섯류(임산물)(3.1%), 산채류(2.8%), 과일견과류(2.4%), 단판(1.9%), 임산물 기타(1.7%), 제재목(1.4%) → CR₁₀ 96.6%
 - (축산물) 수입액은 1,757만 달러(4.0%)로 전월 대비 10.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 *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류: 단백질류(36.6%), 가공육류(21.7%), 모·수모류(13.6%), 기타 육류(8.5%), 원피류(5.8%), 동물성유지(5.4%), 난류(3.0%), 기타 축산물 부산물(2.3%), 포유가축류(1.1%), 기타포유류(0.9%) → CR₁₀ 98.9%
 -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류) 채소류(15.1%), 석제품(10.4%), 기타조제농산품(8.4%), 박류(7.1%), 기타목재(5.4%), 가구류(5.2%), 채유종실(3.8%), 두류(3.6%), 사료(3.1%), 곡류(2.9%) → CR₁₀ 65.1%
 - (수입액 상위 10개 세부 품목) 화강암제품(8.4%), 혼합조제식료품(7.1%), 전분박(5.6%), 기타채소(4.0%), 고추(3.3%), 기타 가구(3.1%), 김치(2.7%), 쌀(2.7%), 대두(2.1%), 기타석제품(2.1%) → CR₁₀ 40.9%

〈표 12〉 중국산 농식품 수입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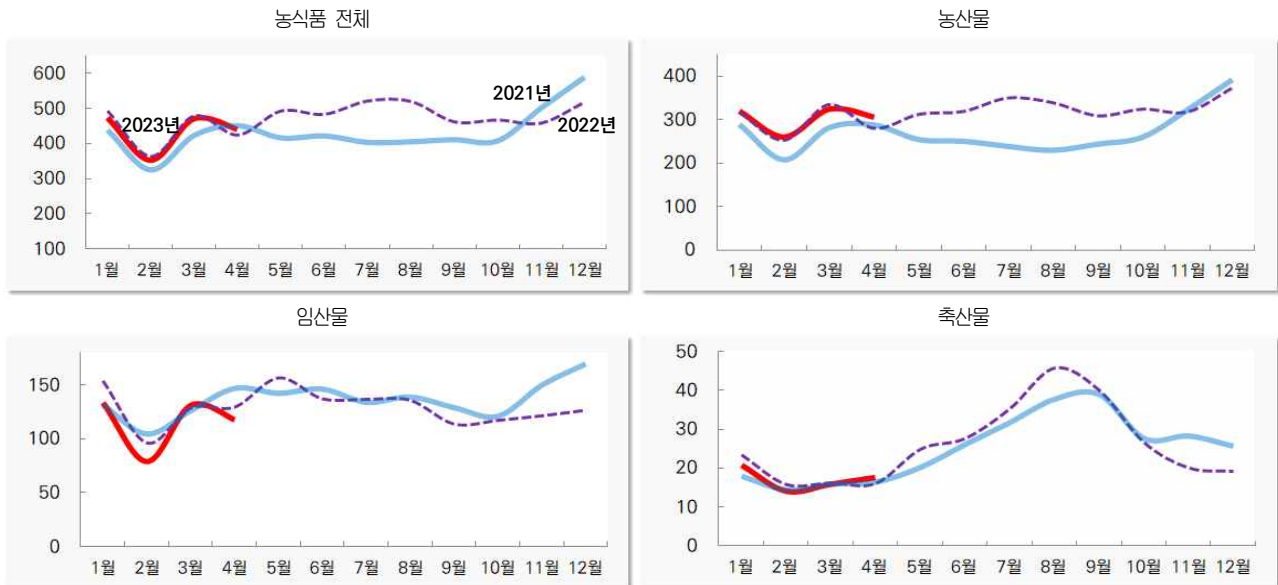
구분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총액	470,570	(100.0)	440,759	(100.0)	1,738,935	(100.0)	-6.3	3.7	-1.4
- 가공	300,968	(100.0)	281,572	(100.0)	1,118,050	(100.0)	-6.4	0.6	-2.6
- 신선	169,601	(100.0)	159,187	(100.0)	620,885	(100.0)	-6.1	9.6	0.9
농산물	323,805	(68.8)	305,911	(69.4)	1,210,598	(69.6)	-5.5	9.3	2.2
- 가공	174,223	(57.9)	163,616	(58.1)	667,329	(59.7)	-6.1	7.8	4.6
- 신선	149,583	(88.2)	142,296	(89.4)	543,269	(87.5)	-4.9	11.1	-0.5
임산물	130,868	(27.8)	117,280	(26.6)	460,077	(26.5)	-10.4	-9.4	-9.5
- 가공	119,438	(39.7)	106,998	(38.0)	411,257	(36.8)	-10.4	-9.7	-11.1
- 신선	11,429	(6.7)	10,281	(6.5)	48,820	(7.9)	-10.0	-6.1	7.5
축산물	15,897	(3.4)	17,568	(4.0)	68,260	(3.9)	10.5	10.3	-3.9
- 가공	7,308	(2.4)	10,958	(3.9)	39,464	(3.5)	50.0	13.1	-15.4
- 신선	8,589	(5.1)	6,610	(4.2)	28,797	(4.6)	-23.0	6.0	17.9

주: 농식품의 범위는 농산물 42개 품목류(484개 세부 품목), 축산물 25개 품목류(151개 세부 품목), 임산물 24개 품목류(105개 세부 품목) 등 총 91개 품목류(740개 세부 품목)임.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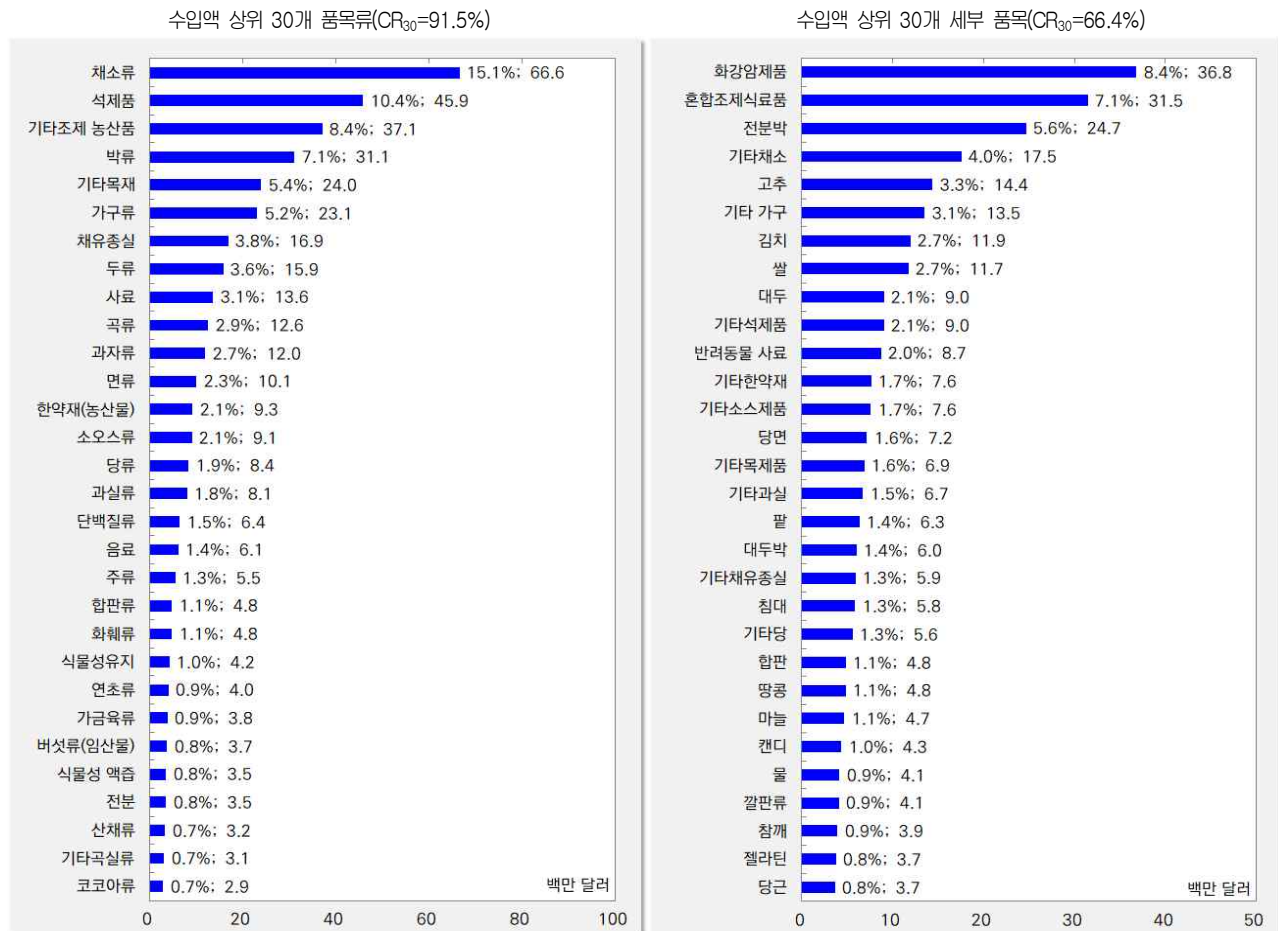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월별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 추이(2021.1~2023.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Tk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그림 12〉 수입액 상위 30개 중국산 농식품 품목류 및 세부 품목(2023년 4월)



자료: aTk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표 13〉 중국산 농산물 품목별 수입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천 달러, %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곡류	15,580	12,604	31,111	-19.1	1.2	-50.5
2	서류	1,998	1,637	7,180	-18.0	12.1	44.9
3	두류	7,244	15,881	42,472	119.2	31.0	-10.8
4	전분	2,515	3,472	12,448	38.1	39.3	33.4
5	채유종실	24,940	16,922	71,956	-32.1	15.4	10.8
6	과실류	9,002	8,073	33,083	-10.3	1.5	10.0
7	기타과실류	3,682	3,076	13,194	-16.5	33.0	-21.4
8	채소류	72,098	66,642	281,854	-7.6	10.0	10.1
9	화훼류	3,122	4,793	12,751	53.5	-5.8	-12.7
10	버섯류(농산물)	3,816	2,699	12,776	-29.3	-12.9	-1.8
11	기타 산식물	94	77	343	-17.7	-47.2	-60.1
12	식물성유지	4,453	4,247	17,961	-4.6	460.7	298.7
13	유지가공품	1,899	1,389	5,774	-26.9	-5.8	19.1
14	농산물 납류	18	5	71	-70.7	129.3	93.5
15	식물성 액즙	6,257	3,473	22,547	-44.5	-38.9	-12.0
16	박류	23,335	31,129	109,405	33.4	45.6	6.9
17	사료	16,591	13,581	55,106	-18.1	-3.9	-5.1
18	기타 식물성 물질	1,056	516	2,584	-51.2	-53.1	-12.1
19	기타농산부산물	1,171	1,348	3,909	15.1	-8.7	-4.7
20	빵류제조용	2,885	1,565	8,805	-45.8	-19.1	39.4
21	효모류	2,846	2,517	9,989	-11.6	11.6	-3.7
22	소오스류	9,842	9,112	36,547	-7.4	-3.2	-1.3
23	향신료	89	17	118	-81.5	16,473.0	314.2
24	지방성물질	174	525	858	200.9	n.a.	n.a.
25	식물성재료	0	0	0	n.a.	-100.0	-100.0
26	커피류	990	616	2,117	-37.8	-37.1	20.9
27	코코아류	2,177	2,917	11,099	34.0	100.1	26.3
28	차류	232	458	1,275	97.1	123.2	-25.2
29	연초류	5,726	4,026	19,311	-29.7	-9.7	50.0
30	인삼류	53	624	921	1,070.0	732.3	63.0
31	한약재(농산물)	7,954	9,267	35,628	16.5	14.5	6.2
32	주류	9,108	5,525	27,858	-39.3	30.7	13.0
33	당류	8,578	8,409	32,716	-2.0	-19.3	-13.8
34	음료	8,453	6,139	26,513	-27.4	15.3	38.1
35	과자류	14,686	11,961	48,645	-18.6	29.2	17.8
36	면류	10,734	10,074	41,023	-6.1	7.3	4.4
37	기타조제 농산품	35,602	37,119	152,601	4.3	-8.9	-10.6
38	효소류	2,542	1,718	11,004	-32.4	-0.2	34.2
39	잠사류	686	725	2,845	5.7	15.8	27.6
40	식물성섬유	5	26	80	430.0	496.0	26.1
41	고무류	0	0	0	n.a.	n.a.	n.a.
42	향료	1,571	1,008	4,119	-35.8	28.7	0.5
합계		323,805	305,911	1,210,598	-5.5	9.3	2.2

자료: aTk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표 14〉 중국산 축산물·임산물 품목류별 수입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천 달러, %

구분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축 산 물	1	포유가축류	397	201	1,306	-49.4	-51.6	-24.5
	2	가금류	0	0	0	n.a.	n.a.	n.a.
	3	기타포유류	187	165	601	-11.6	-26.8	-55.4
	4	조류 기타	0	0	0	n.a.	n.a.	n.a.
	5	파충류(reptilia)	1	1	30	-14.0	-95.0	-69.2
	6	양서류(Amphibian)	8	11	205	52.0	n.a.	31.9
	7	곤충류	0	0	0	n.a.	n.a.	n.a.
	8	지렁이(축산)	1	2	3	90.2	n.a.	n.a.
	9	기타 산동물	0	0	0	n.a.	n.a.	n.a.
	10	포유 가축 육류	0	0	34	-100.0	n.a.	-65.7
	11	가금육류	5,425	3,813	17,788	-29.7	0.3	23.0
	12	양서류 육류	0	0	0	n.a.	n.a.	n.a.
	13	기타 육류	1,360	1,495	4,663	10.0	141.1	89.2
	14	동물성 유지	1,030	946	6,645	-8.1	-24.8	-42.2
	15	동물성 납	29	21	68	-29.1	-71.9	-34.4
	16	골류	57	15	84	-73.7	n.a.	n.a.
	17	한약재(축산물)	102	0	102	-100.0	n.a.	n.a.
	18	기타 축산물 부산물	632	398	2,226	-37.0	-43.0	-14.8
	19	낙농품	0	0	37	-36.4	n.a.	3,601.1
	20	난류	477	523	1,840	9.8	14.6	26.4
	21	단백질류	3,655	6,436	19,172	76.1	25.3	6.7
	22	모.수모류	1,561	2,387	9,836	52.9	14.6	-19.7
	23	원피류	681	1,018	2,872	49.3	11.7	-17.9
	24	생모피류	0	0	0	n.a.	n.a.	n.a.
	25	가죽류	293	134	748	-54.2	-39.8	-43.0
합계			15,897	17,568	68,260	10.5	10.3	-3.9
임 산 물	1	원목	3	0	4	-99.0	n.a.	-57.7
	2	제재목	1,879	1,584	7,461	-15.7	-53.2	-53.2
	3	합판류	6,331	4,839	21,103	-23.6	-36.4	-15.3
	4	단판	2,513	2,272	9,584	-9.6	-45.4	-37.1
	5	섬유판류	774	475	2,655	-38.6	-46.0	-46.0
	6	파티클보드류	116	144	417	24.1	-78.7	-78.3
	7	칩삭편상의 목재	0	0	6	-65.2	n.a.	-59.8
	8	목탄류	349	602	1,950	72.3	129.2	66.5
	9	기타목재	26,029	23,953	89,324	-8.0	9.6	2.4
	10	수목류	55	27	269	-51.8	-77.5	25.1
	11	종자리류	18	17	132	-2.7	-55.0	36.2
	12	산채류	3,290	3,245	15,313	-1.4	-24.8	-10.6
	13	버섯류(임산물)	3,966	3,686	16,810	-7.1	13.9	26.0
	14	과실·견과류	3,608	2,782	14,555	-22.9	-7.4	7.1
	15	락과 수지류	1,958	348	5,377	-82.2	-71.7	-24.3
	16	수피류	222	183	635	-17.4	-1.4	-5.2
	17	엽류	62	30	127	-51.0	272.7	220.0
	18	죽재류	939	1,238	2,756	31.8	-16.2	-13.8
	19	등나무류	170	114	465	-32.7	-6.0	-2.1
	20	편조물 기타	273	301	848	10.5	-41.9	-38.4
	21	원석	489	525	1,736	7.3	125.8	68.4
	22	석제품	50,519	45,859	168,788	-9.2	-9.6	-2.8
	23	임산물 기타	3,206	1,992	8,338	-37.9	16.9	-25.3
	24	가구류	24,099	23,063	91,424	-4.3	-2.8	-19.6
합계			130,868	117,280	460,077	-10.4	-9.4	-9.5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3년 4월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억 959만 달러로 전월 대비 10.7%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4.9% 증가
 - (농산물) 수출액은 9,886만 달러(90.2%)로 전월 대비 6.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8.3% 증가
 - *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류: 기타조제농산품(18.4%), 인삼류(14.6%), 음료(14.2%), 면류(11.0%), 과자류(10.3%), 과실류(7.5%), 연초류(5.4%), 소오스류(4.1%), 주류(3.8%), 당류(2.5%) → CR₁₀ 91.7%
 - (임산물) 수출액은 672만 달러(6.1%)로 전월 대비 14.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83.4% 증가
 - *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류: 석제품(66.9%), 기타목재(19.9%), 임산물 기타(4.4%), 단판(3.0%), 원석(2.6%), 제제품(0.8%), 섬유판류(0.8%), 수목류(0.6%), 합판류(0.5%), 가구류(0.4%) → CR₁₀ 99.98%
 - (축산물) 수출액은 401만 달러(3.7%)로 전월 대비 54.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3.2% 감소
 - *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류: 낙농품(76.4%), 모·수모류(10.1%), 가죽류(5.5%), 기타 축산물 부산물(2.9%), 원피류(1.9%), 포유가축육류(1.9%), 단백질류(0.8%), 기타 육류(0.5%), 동물성 납(0.1%), 동물성 유지(0.05%) → CR₁₀ 99.96%
 -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류) 기타조제농산품(16.6%), 인삼류(13.2%), 음료(12.8%), 면류(9.9%), 과자류(9.3%), 과실류(6.8%), 연초류(4.8%), 석제품(4.1%), 소오스류(3.7%), 주류(3.4%) → CR₁₀ 84.6%
 - (수출액 상위 10개 세부 품목) 혼합조제식료품(14.6%), 기타음료(11.4%), 라면(9.2%), 인삼음료(5.0%), 껌(4.8%), 기타석제품(4.1%), 홍삼(3.8%), 단일과실조제품(3.6%), 홍삼조제품(3.2%), 곡류조제품(2.8%) → CR₁₀ 62.5%

〈표 15〉 대 중국 농식품 수출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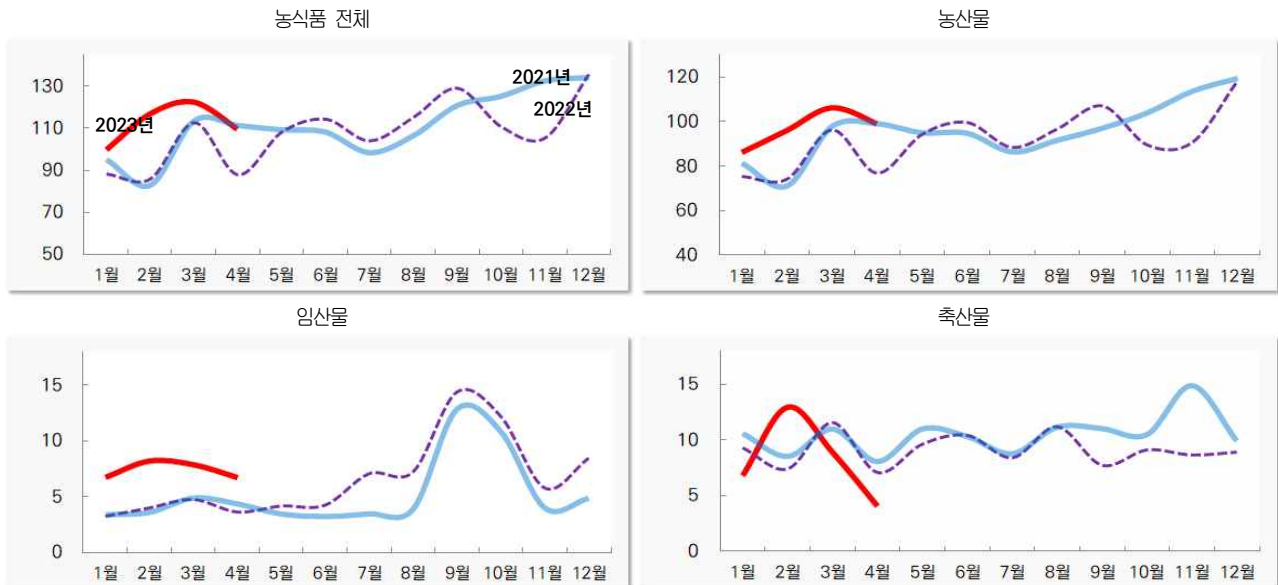
구분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총액	122,690	(100.0)	109,591	(100.0)	448,885	(100.0)	-10.7	24.9	19.9
- 가공	101,943	(100.0)	85,444	(100.0)	373,942	(100.0)	-16.2	11.2	19.7
- 신선	20,747	(100.0)	24,147	(100.0)	74,943	(100.0)	16.4	120.5	21.2
농산물	105,971	(86.4)	98,859	(90.2)	386,790	(86.2)	-6.7	28.3	19.6
- 가공	86,053	(84.4)	75,143	(87.9)	314,064	(84.0)	-12.7	12.9	19.0
- 신선	19,919	(96.0)	23,716	(98.2)	72,726	(97.0)	19.1	126.7	22.5
임산물	7,852	(6.4)	6,723	(6.1)	29,502	(6.6)	-14.4	83.4	87.2
- 가공	7,338	(7.2)	6,502	(7.6)	28,287	(7.6)	-11.4	95.3	97.8
- 신선	514	(2.5)	220	(0.9)	1,215	(1.6)	-57.2	-34.4	-16.7
축산물	8,866	(7.2)	4,009	(3.7)	32,593	(7.3)	-54.8	-43.2	-7.6
- 가공	8,553	(8.4)	3,799	(4.4)	31,591	(8.4)	-55.6	-44.9	-7.8
- 신선	313	(1.5)	211	(0.9)	1,002	(1.3)	-32.7	33.8	-0.8

주: 농식품의 범위는 농산물 42개 품목류(484개 세부 품목), 축산물 25개 품목류(151개 세부 품목), 임산물 24개 품목류 (105개 세부 품목) 등 총 91개 품목류(740개 세부 품목)임.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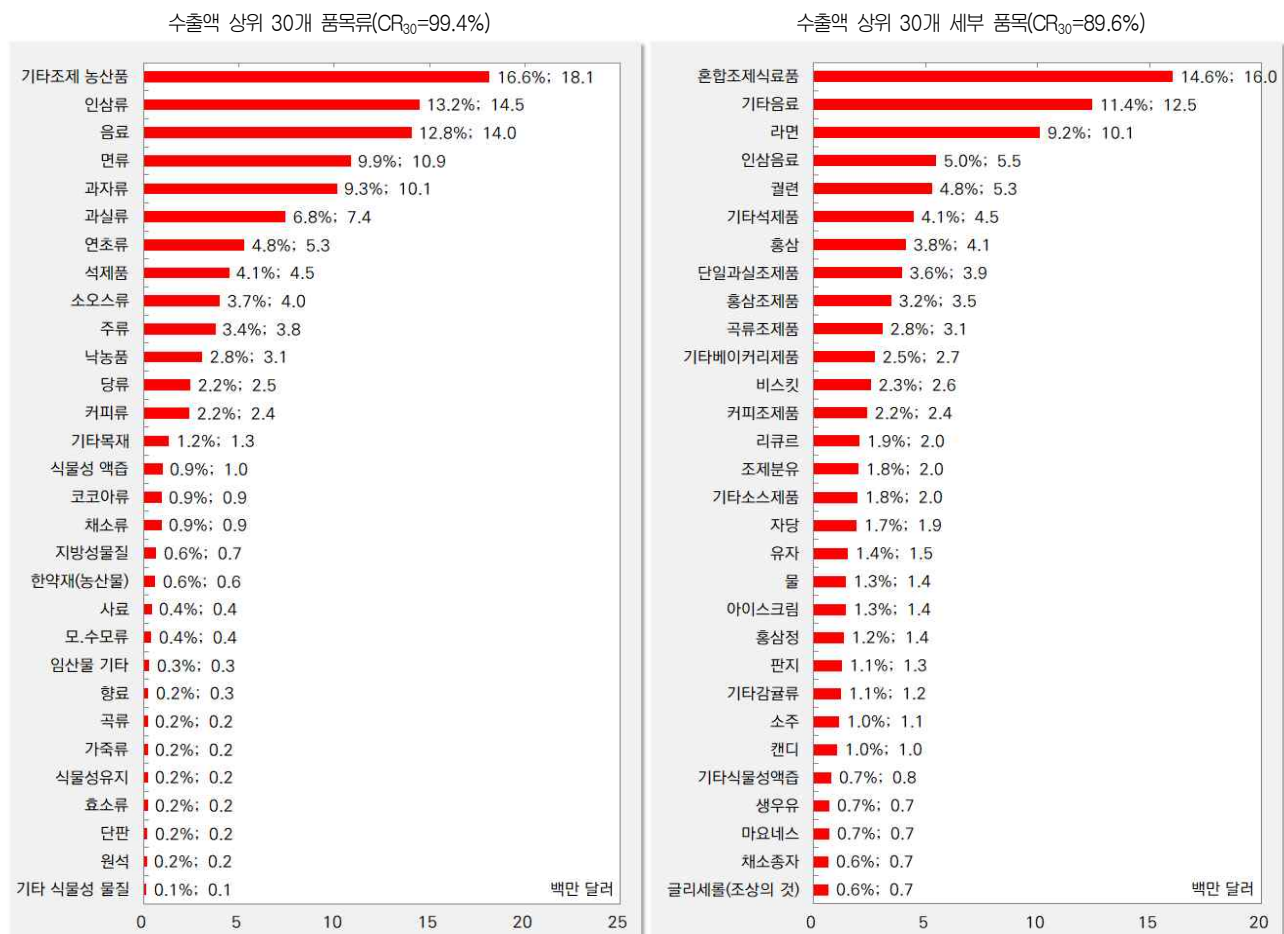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월별 대 중국 농식품 수출액 추이(2021.1~2023.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Tk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그림 14〉 대 중국 수출액 상위 30개 농식품 품목류 및 세부 품목(2023년 4월)



자료: aTk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표 16〉 대 중국 농산물 품목별 수출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천 달러, %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곡류	292	221	796	-24.5	1,080.2	76.4
2	서류	67	7	102	-89.4	-6.3	-14.7
3	두류	0	5	47	n.a.	n.a.	43.2
4	전분	0	0	2	n.a.	-92.7	75.9
5	채유종실	0	0	0	n.a.	n.a.	-100.0
6	과실류	9,118	7,435	34,827	-18.5	-4.2	-3.9
7	기타과실류	0	12	838	404,900.0	n.a.	43,983.6
8	채소류	948	942	3,428	-0.6	14.7	6.0
9	화훼류	36	9	128	-74.4	-89.4	-31.8
10	버섯류(농산물)	0	0	3	n.a.	n.a.	50.0
11	기타 산식물	0	0	0	n.a.	n.a.	n.a.
12	식물성유지	276	217	1,040	-21.5	-29.2	10.6
13	유지가공품	23	40	95	71.5	-21.2	-36.3
14	농산물 납류	37	0	58	-99.0	-97.3	-49.0
15	식물성 액즙	1,142	986	2,944	-13.6	17.1	-35.5
16	박류	0	0	0	n.a.	n.a.	n.a.
17	사료	496	433	1,530	-12.5	-11.6	-7.2
18	기타 식물성 물질	93	143	516	53.7	-35.5	-3.4
19	기타농산부산물	3	2	180	-34.3	n.a.	n.a.
20	빵류제조용	26	39	209	49.6	-78.0	-59.6
21	효모류	27	13	58	-51.9	-63.2	-59.4
22	소오스류	4,917	4,019	15,708	-18.3	18.8	10.5
23	향신료	0	0	12	n.a.	n.a.	-81.2
24	지방성물질	424	672	1,970	58.6	-70.3	-74.0
25	식물성재료	0	2	4	n.a.	-46.4	-83.1
26	커피류	3,180	2,405	10,116	-24.4	-21.8	-20.3
27	코코아류	877	944	3,520	7.7	366.6	22.1
28	차류	0	8	32	109,485.7	107.3	-16.9
29	연초류	2,042	5,295	10,959	159.2	16.4	67.6
30	인삼류	9,381	14,477	31,847	54.3	797.5	72.0
31	한약재(농산물)	77	607	711	683.9	304.4	20.9
32	주류	4,880	3,779	17,090	-22.6	38.5	17.0
33	당류	2,953	2,464	20,997	-16.6	-31.0	7.7
34	음료	11,805	14,048	41,355	19.0	51.2	34.2
35	과자류	12,869	10,148	42,449	-21.1	42.1	48.3
36	면류	17,403	10,865	62,968	-37.6	5.5	21.8
37	기타조제 농산품	21,942	18,146	78,248	-17.3	5.6	23.1
38	효소류	193	216	804	11.6	1,825.4	181.0
39	잠사류	0	0	0	n.a.	n.a.	n.a.
40	식물성섬유	0	5	5	4,064.5	816.2	838.2
41	고무류	0	0	0	n.a.	n.a.	n.a.
42	향료	443	254	1,194	-42.7	-64.8	-45.3
합계		105,971	98,859	386,790	-6.7	28.3	19.6

자료: aTk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표 17〉 대 중국 축산물·임산물 품목류별 수출 추이(2023년 3월 ~ 4월)

단위: 천 달러, %

구분	번호	품목명	2023년			4월 증감률		
			3월	4월	누적 (1~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축산물	1	포유가축류	1	1	10	170.0	-64.5	-30.7
	2	가금류	0	0	0	n.a.	n.a.	n.a.
	3	기타포유류	2	0	3	-100.0	-100.0	-45.9
	4	조류 기타	0	0	0	n.a.	n.a.	n.a.
	5	파충류(reptilia)	0	0	0	n.a.	n.a.	n.a.
	6	양서류(Amphibian)	0	0	0	n.a.	n.a.	n.a.
	7	곤충류	0	0	0	n.a.	n.a.	n.a.
	8	지렁이(축산)	0	0	0	n.a.	n.a.	n.a.
	9	기타 산동물	0	0	0	n.a.	n.a.	n.a.
	10	포유 가축 육류	0	74	163	n.a.	5,613.2	-48.4
	11	가금육류	0	0	4	n.a.	-100.0	-32.6
	12	양서류 육류	0	0	0	n.a.	n.a.	n.a.
	13	기타 육류	89	20	265	-77.6	-75.3	-11.8
	14	동물성 유지	4	2	6	-50.7	-23.0	-0.7
	15	동물성 납	36	3	49	-91.0	-73.6	-36.1
	16	골류	0	0	0	n.a.	n.a.	n.a.
	17	한약재(축산물)	0	0	0	n.a.	n.a.	n.a.
	18	기타 축산물 부산물	222	115	557	-48.1	66.5	51.6
	19	낙농품	7,600	3,064	28,396	-59.7	-42.7	-2.9
	20	난류	0	0	0	n.a.	n.a.	n.a.
	21	단백질류	20	31	91	57.6	72.4	-81.9
	22	모.수모류	395	405	1,744	2.5	16.1	21.9
	23	원피류	150	75	246	-50.0	-78.9	-76.3
	24	생모피류	0	0	0	n.a.	n.a.	n.a.
	25	가죽류	349	219	1,059	-37.3	-73.1	-46.0
합계			8,866	4,009	32,593	-54.8	-43.2	-7.6
임산물	1	원목	0	0	0	n.a.	n.a.	n.a.
	2	제재목	0	56	158	n.a.	-18.1	-62.0
	3	합판류	28	35	110	24.8	-2.4	-21.5
	4	단판	122	204	495	67.7	-17.5	-21.2
	5	섬유판류	43	52	143	21.5	216.3	78.6
	6	파티클보드류	0	0	0	n.a.	n.a.	n.a.
	7	칩삭편상의 목재	2	0	2	-100.0	n.a.	n.a.
	8	목탄류	0	0	0	n.a.	-100.0	-98.3
	9	기타목재	2,609	1,337	9,823	-48.8	50.7	131.3
	10	수목류	234	43	420	-81.5	14.9	33.3
	11	종자류	0	0	0	n.a.	n.a.	n.a.
	12	산채류	0	0	0	n.a.	n.a.	n.a.
	13	버섯류(임산물)	0	0	0	n.a.	n.a.	n.a.
	14	과실·견과류	81	0	89	-100.0	n.a.	22,192.0
	15	락과 수지류	0	1	2	171.5	122.7	-97.8
	16	수피류	0	0	1	166.4	185.0	60.5
	17	엽류	0	0	0	n.a.	n.a.	n.a.
	18	죽재류	1	0	1	-100.0	n.a.	n.a.
	19	등나무류	0	0	0	n.a.	n.a.	n.a.
	20	편조물 기타	0	0	1	n.a.	n.a.	n.a.
	21	원석	199	177	706	-10.8	-40.6	-38.3
	22	석제품	4,249	4,495	16,567	5.8	146.5	120.5
	23	임산물 기타	200	293	814	46.2	313.8	150.5
	24	가구류	84	29	170	-64.9	-83.0	-80.0
합계			7,852	6,723	29,502	-14.4	83.4	87.2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